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경영학석사 학위논문

FTA원산지결정기준 세부항목별 이해도에 관한 연구

- FTA전문가와 피교육생의 이해도 차이분석을 중심으로 -



2015년 2월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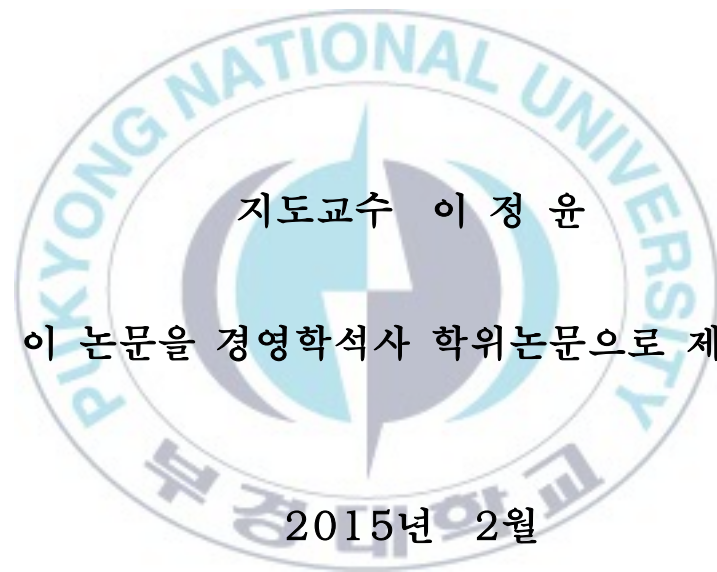
국제통상물류학과

박 기 영

경영학석사 학위논문

FTA원산지결정기준 세부항목별 이해도에 관한 연구

- FTA전문가와 피교육생의 이해도 차이분석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이 정 윤

이 논문을 경영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2월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통상물류학과

박 기 영

박기영의 경영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5년 2월



주 심 경제학박사 하 명 신 (인)

위 원 경영학박사 조 찬 혁 (인)

위 원 지리학박사 이 정 윤 (인)

(국문초록)

FTA 원산지 결정기준 세부항목별 이해도에 관한 연구

- FTA 전문가와 피교육생의 이해도 차이분석을 중심으로 -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통상물류학과
해운항만전공
박 기 영
지도교수 : 이 정 윤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입 품목에 대한 원산지 인정을 받아야 하므로, FTA 실무에서 원산지 결정기준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업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다양한 FTA 협정에서 적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은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표현의 모호함으로 인하여 비전문가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정부 및 각종 유관기관에서는 ‘원산지관리사’ 양성과정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FTA 활용 효과를 제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례로 2014년의 경우 이미 10월말까지 약 4,200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한 다양한 교육이 개설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향후 이런 노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FTA 협정 자체 또는 FTA로 인한 거시적인 경제효과에 대한 연구는 많았으나, FTA 활용에서 가장 중요한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이해 및 관련 교육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많이 미진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적용, 심사, 강의하는 전문가 집단(세관공무원, 관세사, 교육강사

등)과 관련 교육을 수강하는 피교육생을 두 개 집단으로 나누어 다양한 원산지 결정기준의 세부내용별로 각 조사집단이 느끼는 난이도의 차이와 이해도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금번 연구결과 및 시사점은 향후 관련 교육의 성과를 높이고 원산지 결정기준 및 FTA 활용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 차

국문초록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2
제2장 원산지결정기준 관련 선행연구 및 교육현황	4
제1절 FTA 개요와 선행연구	4
2.1.1 FTA 개요	4
2.1.2 선행연구의 검토	8
제2절 원산지의 개념과 구성	10
2.2.1 원산지의 개념	10
2.2.2 원산지결정기준의 구성	11
제3절 원산지결정기준 관련 교육현황	14
2.3.1 교육현황	14
2.3.2 원산지관리사의 배출 현황	19
제3장 원산지결정기준의 세부항목별 내용	21
제1절 일반기준	21
3.1.1 직접운송원칙	21
3.1.2 완전생산물	22
3.1.3 불완전생산물	24
3.1.4 역내가공원칙	26

3.1.5 충분가공원칙	28
제2절 품목별기준	30
3.2.1 세번변경기준	30
3.2.2 가공공정기준	31
3.2.3 부가가치기준	32
제3절 특례(보충)기준	34
3.3.1 누적기준	34
3.3.2 최소허용기준	36
3.3.3 중간재	37
3.3.4 대체가능물품	38
3.3.5 간접재료	39
3.3.6 부속품·예비부분품·공구	40
3.3.7 소매용 포장·용기	41
3.3.8 운송 포장·용기	42
3.3.9 세트물품	43
3.3.10 재수입물품	44
제4장 원산지결정기준 세부항목별 이해도 차이 분석	45
제1절 설문지 작성개요 및 조사방법	45
4.1.1 설문지 작성개요	45
4.1.2 설문지 조사방법	46
제2절 설문지 분석 및 결과	48
4.2.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분석	48
4.2.2 원산지결정기준별 난이도 수준 분석	51
4.2.3 T검정	54
제3절 이해도 차이가 나는 결정기준들의 애로사항	57

4.3.1 중간재	57
4.3.2 대체가능물품	59
4.3.3 세트물품	61
4.3.4 역내가공원칙	63
4.3.5 이해도 차이가 나는 결정기준의 시사점	64
제4절 이해도를 어렵게 하는 요인 및 개선요인	66
4.4.1 이해도를 어렵게 하는 요인	66
4.4.2 이해도 제고를 위한 개선요인	69
 제5장 결론	 73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73
제2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	74
 참고문헌	 77
 부록	 79
<부록 1> 피교육생용 설문지	79
<부록 2> 전문가용 설문지	86
 ABSTRACT	 94

표 목 차

<표 2-1> 발효된 FTA	4
<표 2-2> 타결된 FTA	5
<표 2-3> 협상중인 FTA	6
<표 2-4> 협상재개/여건조성 FTA	6
<표 2-5> 검토중인 FTA	7
<표 2-6> 원산지결정기준 관련 선행연구	8
<표 2-7> 원산지결정기준의 구성	13
<표 2-8> 원산지관리사의 배출 현황	19
<표 3-1> FTA협정별 직접운송 요건의 비교	22
<표 3-2> FTA협정별 완전생산품 요건의 비교	23
<표 3-3> FTA협정별 역외가공 요건의 비교	27
<표 3-4> FTA협정별 충분가공원칙의 요건의 비교	28
<표 3-5> FTA협정별 누적기준의 요건의 비교	35
<표 3-6> FTA협정별 최소허용기준의 요건의 비교	36
<표 3-7> FTA협정별 중간재의 요건의 비교	37
<표 3-8> FTA협정별 대체가능물품의 요건의 비교	39
<표 3-9> FTA협정별 간접재료의 요건의 비교	40
<표 3-10> FTA협정별 부속품·예비부분품·공구의 요건의 비교	41
<표 3-11> FTA협정별 소매용 포장·용기의 요건의 비교	42
<표 3-12> FTA협정별 운송 포장·용기의 요건의 비교	42
<표 3-13> FTA협정별 세트물품의 요건의 비교	43
<표 4-1> 피교육생 설문지 분석	46
<표 4-2> 전문가 설문지 분석	47
<표 4-3> 피교육생 인구통계학적 분석	48

<표 4-4> 전문가 인구통계학적 분석	50
<표 4-5> 세부항목별 변수들의 집단통계량	51
<표 4-6> 피교육생의 어렵게 느끼는 순서	52
<표 4-7> 전문가가 어렵게 느끼는 순서	52
<표 4-8> 피교육생과 전문가집단의 차이를 T검정을 통한 분석	54
<표 4-9> t검정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원산지결정기준과 난이도 평균값 ...	56
<표 4-10> 중간재의 애로사항	59
<표 4-11> 대체가능물품의 애로사항	60
<표 4-12> 세트물품의 애로사항	63
<표 4-13> 피교육생의 이해도를 어렵게 하는 요인 빈도	66
<표 4-14> 전문가의 이해도를 어렵게 하는 요인 빈도	68
<표 4-15> 이해도 제고를 위한 개선요인 빈도(피교육생)	69
<표 4-16> 이해도 제고를 위한 개선요인 빈도(전문가)	71

그 립 목 차

<그림 2-1> 원산지관리사 양성교육의 진행과정	14
<그림 2-2> 오프라인 교육의 개설 절차	15
<그림 2-3> 2014년도 원산지관리사 양성교육의 모집 개설인원	16
<그림 2-4> 2014년도 담당자 대상교육의 모집 개설인원	18
<그림 3-1> 협정별 불완전생산품 분류	25
<그림 3-2> 세번변경기준의 분류	30
<그림 3-3> 가공공정기준의 분류	31
<그림 3-4> 부가가치기준의 분류	33
<그림 4-1> 중간재의 예시	57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014년 11월 현재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를 순서로 47개국과의 FTA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의 타결로 인하여 앞으로의 FTA의 범위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밖에도 동시 다발적으로 인도네시아, 한중일, 베트남, RCEP과 협상중에 있다. 일본, 멕시코, GCC과 (협상재개/여건조성)에 있으며 MERCOSUR, 이스라엘, 중미, 말레이시아와는 검토 중에 있다.¹⁾

이렇게 FTA의 범위는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FTA의 특혜 관세를 받기 위해서는 수출입 품목에 대한 원산지 인정을 받아야 하므로, FTA 실무에서 원산지 결정기준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업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다양한 FTA 협정에서 적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은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표현의 모호함으로 인하여 비전문가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반해 FTA의 특혜 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많은 기업들은 전문가의 인원부족으로 조금 더 효과적으로 FTA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 및 각종 유관기관에서는 ‘원산지관리사’ 양성과정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FTA활용 효과를 제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례로 2014년의 경우 이미 10월말까지 약 4,200명의 모집인원에 달하는 교육을 개설하

1) 관세청, “우리나라의 FTA체결현황” <<http://www.customs.go.kr>>.

여 수강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며, 향후 이런 노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FTA에 관한 연구를 보면 대부분 FTA협정 자체 또는 FTA로 인한 거시적인 경제효과에 대한 연구는 많았으나, FTA활용에서 가장 중요한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이해 및 관련 교육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많이 미진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적용, 심사, 강의하는 전문가 집단(세관공무원, 관세사, 교육강사 등)과 관련 교육을 수강하는 피교육생을 두 개 집단으로 나누어 다양한 원산지 결정기준의 세부내용별로 각 조사 집단이 느끼는 난이도의 차이와 이해도를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제 2절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연구방법은 기존의 문헌자료와 연구 사례를 분석하고, 전문가 집단과 피교육생의 두 집단에 대하여 설문지 조사를 진행하고 통계 프로그램 SPSS 20 을이용한 분석으로 진행하였으며 두 집단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검정을 활용하여 두 집단의 차이를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원산지관련 교육들 중에서 ‘원산지관리사’의 양성교육에 대해 초점을 맞춰 대구, 구미, 경주, 부산 등의 교육생 대상으로 설문지를 회수하고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적용, 심사, 강의하는 전문가 집단(세관공무원, 관세사, 교육강사 등)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회수하여 진행하였으며, 그로 인해 알아내고자 하는 점은 FTA협정에 관한 내용의 원산지결정기준 일반기준에 관한 세부항목별 내용에 대해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적용,

심사, 강의하는 전문가 집단(세관공무원, 관세사, 교육강사 등)과 관련 교육을 수강하는 피교육생 입장에서의 세부항목별 난이도와 이해도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비교하여 어떤 세부항목에서 차이가 났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5장으로 구성되었다. 제 1장 서론에서는 연구배경 및 목적, 범위 및 방법과 논문의 구성을 기술하였다. 제 2장에서는 FTA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선행연구를 조사하고 FTA현황과 원산지결정기준의 구성과 그와 관련된 교육현황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구성에 따라 제 3장에서는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세부항목별 내용을 일반기준과 특례(보충)기준에 따라서 각 세부항목별 내용들을 정리하였다. 제 4장에서는 원산지결정기준 세부항목별 이해도에 대한 연구로써 설문지 작성과 조사방법, 분석 방법 및 결과, 그에 따른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였다. 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요약하고 시사점과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을 기술하였다.

2장 FTA원산지결정기준 관련 선행연구 및 교육현황

제 1절 FTA 개요와 선행연구

2.1.1 FTA 개요

<표 2-1> 발효된 FTA

협정	발효일
한-칠레	2004. 4. 1
한-싱가포르	2006. 3. 2
한-EFTA	2006. 9. 1
한-ASEAN	2007. 6. 1
한-인도	2010. 1. 1
한-EU	2011. 7. 1
한-페루	2011. 8. 1
한-미국	2012. 3. 15
한-터키	2013. 5. 1

자료 : 관세청

2014년 11월까지 우리나라와 발효된 FTA는 최초의 FTA이며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인 칠레를 시작으로 ASEAN²⁾의 교두보 싱가포르, 유럽시장의

2)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10 개국.

교두보 EFTA³⁾, 우리의 2013년 제 2위의 교역대상인 ASEAN, BRICs⁴⁾국의 거대시장 인도, GDP기준 세계최대경제권 EU,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 페루, 거대 선진경제권 미국, 유럽 중앙아시아 진출 교두보 터키의 순으로 발효가 되었다.

<표 2-2> 타결된 FTA

협정	진행 사항
한-콜롬비아	정식서명 (2013. 2. 21)
한-호주 ⁵⁾	타결선언 (2014. 2. 10)
한-캐나다 ⁶⁾	타결선언 (2014. 3. 11)
한-중국	타결선언 (2014. 11. 10)
한-뉴질랜드	타결선언 (2014. 11. 15)

자료 : 관세청

2014년 11월 현재까지 타결된 FTA로는 중남미 신흥시장인 콜롬비아, 오세아니아 주요시장의 호주, 북미의 선진시장인 캐나다와 우리나라의 제1위 교역대상인 중국, 오세아니아 주요시장의 뉴질랜드순으로 타결되었다.

3)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

4) 풍부한 자원, 노동력과 넓은 영토로 발전가능성이 큰 나라 :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4개국.

5) 한-호주 FTA는 2014. 12. 12 발효되었다.

6) 한-캐나다 FTA는 2015. 1. 1 발효되었다.

<표 2-3> 협상중인 FTA

협정	진행 현황
한-인도네시아	7차 협상 개최(2014. 2)
한-베트남 ⁷⁾	8차 협상 개최(2014. 11)
한-중-일	6차 협상 개최(2014. 11)
RCEP ⁸⁾	5차 협상 개최(2014. 6)

자료 : 관세청

2014년 11월 현재 협상중인 FTA로는 ASEAN 회원국 중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인도네시아, ASEAN의 제 2위 교역국이며 최대 투자 상대국인 베트남, 동북아 경제통합의 기반을 마련을 위한 한-중-일, 세계 GDP의 28.4%를 차지하는 동아시아 경제권인 RCEP⁹⁾이 협상 중에 있다.

<표 2-4> 협상재개/여건조성 FTA

협정	진행 현황
한-일	2012. 6. 25까지 총 3차례 실무협의 개최
한-멕시코	2008. 6. 11까지 총 2차례 협상 개최
한-GCC	2009. 11. 19까지 총 3차례 협상 개최

자료 : 관세청

7) 한-베트남 FTA는 2014. 12. 8 제 9차 협상을 개최하고, 2014. 12. 10 타결을 선언하였다.

8) RCEP는 2014. 12 제 6차 협상을 개최하였다.

9) ASEAN과 한·중·일,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국의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정으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아르셉'이라고도 한다.

2014년 11월 현재 협상재개/여건조성 FTA는 우리의 제 4위 교역대상인 일본, 북중미 시장 교두보의 멕시코, 아중동 국가와의 최초 FTA의 GCC¹⁰⁾가 진행 중이다.

<표 2-5> 검토중인 FTA

협정	진행 현황
한-MERCOSUR	2006. 11 까지 총 4차례 공동연구 실시 2009. 7. 23 무역과 투자 증진을 위한 공동협약체 설립MOU서명
한-이스라엘	2010. 8 까지 총 4차례 공동연구 실시
한-중미	2011. 4 까지 공동연구 개시 및 종료
한-말레이시아	2012. 4 타당성연구 중간점검회 개최

자료 : 관세청

2014년 11월 현재 검토중인 FTA로는 BRICs의 자원부국인 MERCOSUR¹¹⁾, 서부 중동지역 거점시장인 이스라엘, 북미와 남미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인 중미, ASEAN의 말레이시아가 있다.

10)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카타르·오만·바레인 등 6개국이 역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결성한 지역협력기구.

11)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2.1.2 선행연구의 검토

<표 2-6> 원산지결정기준 관련 선행연구

	논문제목	저자	연구방법
1	FTA 원산지결정에 미치는 요인분석 :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중심으로	조국형(2012)	로지스틱 회귀 분석방법
2	한·중 FTA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이진희(2013)	기준문헌연구
3	한·인도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김기영(2009)	기준문헌연구
4	중국의 FTA 원산지 결정기준 비교 연구 : 중·ASEAN, 칠레, 뉴질랜드 FTA중심으로	요천주(2013)	기준문헌연구
5	FTA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비교 연구 : 중·칠레 FTA, 한·칠레FTA를 중심으로	조염하(2009)	기준문헌연구
6	중·한 FTA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장평(2011)	기준문헌연구
7	한·중·일 FTA추진에 따른 한국 주요산업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동택영(2006)	기준문헌연구
8	한·중·일 FTA 추진에 따른 원산지 결정 기준에 관한 연구	윤희숙(2005)	기준문헌연구
9	FTA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른 활용전략에 관한 연구	김무한(2010)	기준문헌연구
10	한국 FTA 부가가치 원산지결정기준의 효율적 적용에 대한 연구	김순옥(2011)	기준문헌연구
11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별 원산지 결정기준 및 세관절차 규정에 대한 비교 연구	주재협(2011)	기준문헌연구
12	FTA 규정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마일남(2005)	기준문헌연구
13	FTA 원산지규정을 활용한 수출 전략 : 원산지 결정기준 활용 모델을 중심으로	이성임(2010)	기준문헌연구

자료 : 연구자 작성

기존의 선행연구들의 내용을 조사한 결과 김무한(2010), 조국형(2012)은 품목별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해 분석과 협정별 비교를 통하여 특혜 원산지 결정기준 및 엄격성에 대한 상관관계를 알아보았고, 이진희(2013), 조염하(2009), 김순옥(2011)은 한국과 기체결 FTA의 원산지규정의 비교를 통해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새로운 변화와 추이를 도출하고 활용하여 보다 나은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동택영(2006), 윤희숙(2005), 마일남(2005)은 FTA를 추진함에 있어 원산지규정과 관련하여 한국에 유리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모색하고 협상을 위한 기본방향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김기영(2009)과 장평(2011)은 한국과 FTA체결 국가와의 산업별 평균관세를, 산업별 무역규모와 상품수지, 산업별 수입시장 점유율, 무역특화지수로 분석하고 산업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제시하여 추후 FTA 협상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요천주(2013)은 중국의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특징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분석하여 향후 중국의 원산지규정의 결정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목적을 연구하였으며, 주재협(2011)은 각 협정별 이해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수집 분석하여 향후 FTA체결 가능성이 높은 일본 및 중국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 가능한 협상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성임(2010)은 원산지결정기준을 활용한 모델을 통해 기업의 수출전략을 분석하여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와 원산지규정의 의미, 원산지결정기준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심도 있게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FTA 협정 자체 또는 FTA로 인한 거시적인 경제효과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기존의 문헌자료나 사례를 통한 분석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 원산지결정기준과 관련된 연구들의 일반적인 연구 방법이었다. 그렇기에 협정의 체결국가별로 상이하거나 각 연구들이 연구하고자 하는 효과들이 상이한 것을 제외한 내용들은 큰 맥락에서 봤을 때 포괄적으로 시사하는 점이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FTA의 중요성은 점점 심화됨에 따라 FTA협정 체결국가는 세계적으로 점점 확산되는 추이를 보이는데 FTA에 대한 전문가는 부족하다. 기업들은 FTA를 보다 더 쉽고 편리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산지의 전문가 양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는 이 원산지관리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과 자격시험을 통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러한 전문가 양성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다양

한 교육들이 얼마만큼 잘 진행되고 있고 미비한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하며, FTA 특혜 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 FTA를 활용함에 있어서 많은 요건들이 존재하지만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이해 및 관련 교육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많이 미진하였으므로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초점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2절 원산지의 개념과 구성

2.2.1 원산지의 개념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물품이 생산 또는 제조, 가공된 지역이나 국가를 의미하는데 이는 관세의 부과, 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에 있어서 적용되는 국가를 말한다. FTA원산지결정기준에 있어서 원산지는 협정 등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어느 기준에 따라 당사국의 영내에서 생산 공정을 수행하여야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동식물의 경우에는 성장한 나라를 의미한다. 또한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은 상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행정 절차 등을 말하는데 원산지제도의 기능으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보호, 보건위생 및 자연환경 보호, 산업 및 무역정책, 무역장벽 등의 기능이 있지만 FTA에서의 주요 목적은 수출입을 통한 물품을 거래함

에 있어서 FTA협정에 따라 관세 특혜를 받기위한 것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물품의 생산 활동이 글로벌화 되고 여러 국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화됨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 결정이 어려워지고 있다. 갈수록 FTA 체결 국가는 증가하고 있으며 원산지 규정이 크게 부각되고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기준으로 원산지를 결정하는지가 중요하게 되었다.

한편 원산지 결정기준은 특정 제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되었을 경우 과연 어느 국가를 원산지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기준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원산지 결정기준은 당해 제품의 특성과 정책적 목표를 고려하여 설정하는데 사용되는 기술적 요건을 통칭한다.¹²⁾

2.2.2 원산지결정기준의 구성

기존의 많은 서적들과 문헌자료들과 앞의 선행연구들의 조사를 통해 원산지결정기준의 분류가 각각 다르게 분류가 되어있으며 일관성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조국형(2012), 김기영(2009), 윤희숙(2005)는 완전생산품과 실질적변형기준, 특례로 나뉘는데 실질적변형기준에는 세번변경기준, 가공공정기준, 부가가치기준, 선택기준과 조합기준이 있다고 하였으나 이진희(2013), 요천주(2013), 조염하(2009), 장평(2011)은 실질적변형기준에서 선택기준과 조합기준은 포함하지 않았다.

그리고 김무한(2010), 이성임(2010)은 특례기준에 불인정공정과 몰업원칙,

12) 김재식, 「무역물품에 대한 원산지 규정의 통일협상에 관한 사례연구」, 경영연구 제 6권, 1997, p.70.

직접운송원칙까지 포함하여 분류하였고, 주재협(2011)은 특례기준에 직접운송원칙이 포함된다고 분류하였으나 김순옥(2011), 동택영(2006), 마일남(2005)은 직접운송원칙은 특례기준에 포함하여 분류하지 않고 완전생산품, 실질적변형물품, 특례기준, 직접운송원칙으로 크게 분류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의 원산지결정기준의 분류는 명확히 규정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선행 연구자들이 주관에 따라서 분류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원산지결정기준의 분류를 할 때 크게 일반기준과 품목별기준으로 나뉘며 일반기준에는 기본원칙과 특례원칙이 있는데 기본원칙에는 완전생산품과 불완전생산품, 직접운송원칙이 있으며 불완전생산품에는 실질적변형기준에 대한 역내가공원칙과 충분가공원칙이 있는데, 그 외의 경우에도 원산지를 인정해주기 위하여 특례(보충)기준의 누적기준, 최소허용기준, 중간재, 대체가능물품, 간접재료, 부속품·예비부분품·공구, 소매용 포장·용기, 운송 포장·용기, 세트물품, 재수입물품의 10가지 기준들이 있다.

품목별기준에는 개별기준과 조합기준이 있으며 개별기준은 세번변경기준, 가공공정기준, 부가가치기준으로 나뉘는데 이 3가지 기준들을 각각 선택하여 적용하면 개별기준이고 조합하여 적용을 하면 조합기준이다. 이 연구에서는 개별기준에 대해서 일반적인 세부항목별로 난이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조합기준은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선행연구나 관련 문헌들에는 일반기준의 특례원칙에 대해서 6가지나 8가지 정도만 명시되어있고 이 부분 역시 일관성 없이 분류를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조국형(2012)과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원산지결정기준서적이나 다른 문헌자료들을 보면 세번변경기준, 가공공정기준, 부가가치기준을 품목별기준으로 하여 별개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기준들은 불완전생산품의 원산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특정한 품목이나 HS코드

와 연관되어서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이해하기 용이 하도록 구분하여 분류하여 놓은 것이지 엄밀하게 보았을 때 세번변경 기준, 가공공정기준, 부가가치기준이 품목별기준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기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품목별기준이 완전생산품과 불완전생산품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불완전생산품 적용에 대해 포함되는 것이다. 이 부분의 신뢰도에 있어서 담당자나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진행한 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설문조사에서는 불완전생산품을 포함한 18가지 변수들을 조사하였으나 불완전생산품은 완전생산품이 아닌 역내가공원칙과 충분가공원칙에 대하여 원산지를 결정할 때를 포괄하는 부분으로 본문에서 불완전생산품의 조사값을 제외한 17가지 변수들에 대해서 적용하였다.

<표 2-7> 원산지결정기준의 구성

구분	종류	
일반기준	기본원칙	완전생산품
		불완전생산품: 역내가공원칙 + 충분가공원칙
	분야별특례	직접운송원칙
		누적기준 / 최소허용기준 / 중간재
		대체가능물품 / 간접재료
		부속품·예비부분품·공구 / 소매용 포장·용기
		운송용 포장·용기 / 세트물품 / 재수입물품
품목별기준	개별기준	세번변경기준
		가공공정기준
		부가가치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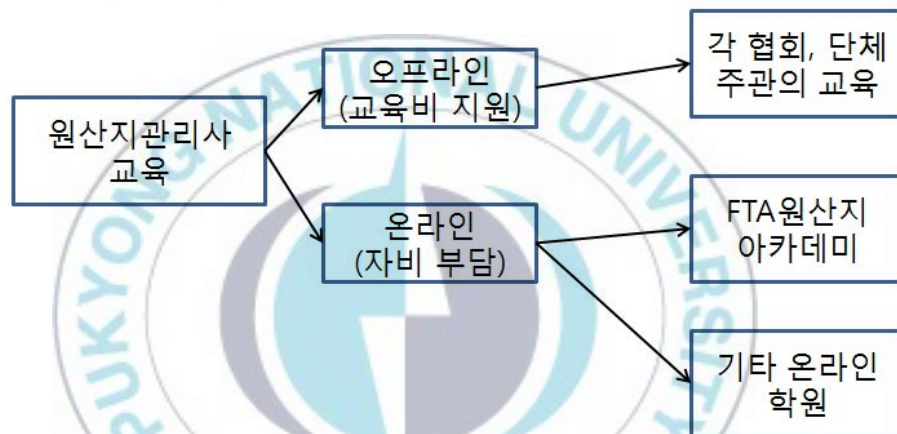
자료: 국제원산지정보원

제 3절 원산지결정기준 관련 교육현황

2.3.1 교육 현황

<그림 2-1> 원산지관리사 양성교육의 진행과정

◆ 교육의 진행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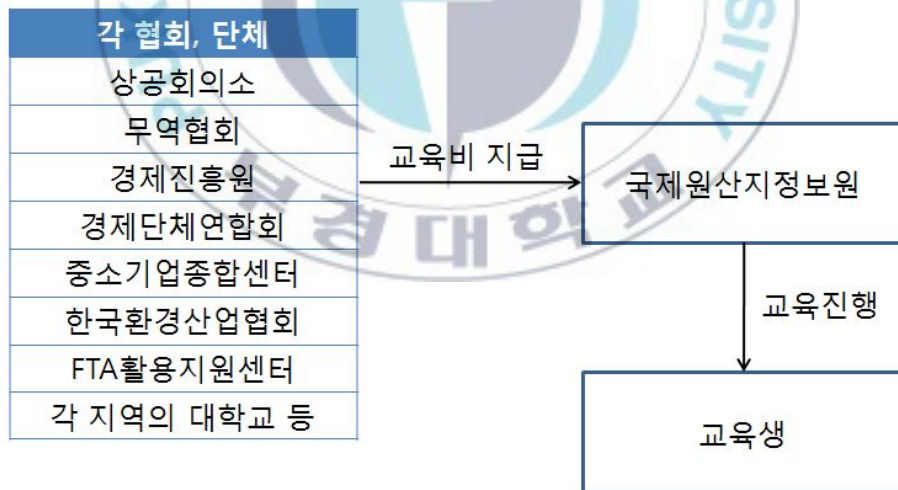
자료 : 연구자 작성

원산지관리사 양성교육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오프라인교육은 각 협회 및 단체가 주관하고 있는 교육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각 지역의 협회나 단체들이 교육을 개설하여 모집공고를 언제 개설하게 되는지 알지 못하면 접수기간에 접수하기가 어렵고 또한 그에 따른 교육일정과 시간을 준수하여 진행해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온라인 교육은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원산지관리사 교육과 시험 및 도서를 이관하여 운영하고 있는 FTA원산지아카데미를 통한 교육과 기타 온라인학원을 통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교육은 교육시간과 일정이 자유롭지만 교육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있으며, 기존 일부의 온라인 학원은 존재하였지만 2014년도 12회 시험부터는 의무교육이 없어지게 되면서 FTA원산지아카데미가 생겨났다. 그에 따라 온라인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오프라인 교육이 많이 차지하고 시험의 내용들이 기초가 없는 교육생들에게는 처음 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교육비 지원이라는 장점과 함께 오프라인 교육이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 연구에서는 오프라인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 참가하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분석하는 방법으로 작성되었다.

<그림 2-2> 오프라인 교육의 개설 절차

◆ 오프라인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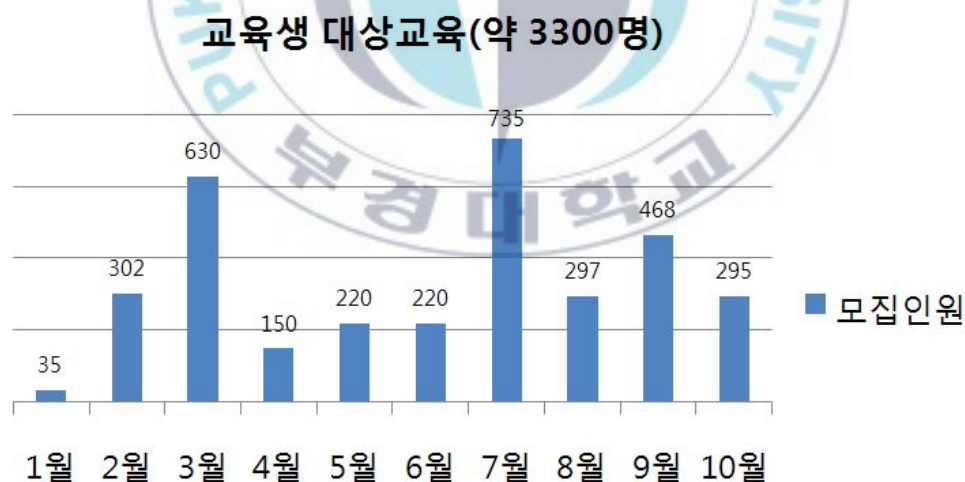
자료 : 연구자 작성

이 교육의 주최·주관은 국제원산지정보원과 각 지역의 상공회의소, 무역협회, 경제진흥원, 경제단체연합회, 중소기업종합센터, 한국환경산업협회,

FTA활용지원센터,각 지역의 대학 등이 연계하여 교육이 실시되었으며 이 교육은 각 협회 및 단체들이 운영하는 운영비를 가지고 교육을 개설하여 모집하고, 국제원산지정보원에게 교육비를 지급하면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교육생에 대하여 교육을 진행되는데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는 세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 경력이 많은 세관공무원과 관세사들이 강의를 하게 된다.

또한 이 교육은 무역으로 많은 세수를 확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있어서 국가사업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게 되는데 이에 따라 원산지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필요하게 되므로 많은 협회나 단체들이 교육을 개설하며 교육비를 지원하여 교육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림 2-3> 2014년도 원산지관리사 양성교육의 모집 개설인원



자료 : 연구자 작성

FTA의 중요성에 따라 원산지 관련 업무를 담당할 인력인 원산지관리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으로 정부 및 유관기관 등에서 다양한 교육을 진행

하고 있다. 2014년도에는 5대 광역시를 기점으로 약 24개 지역에서 교육이 실시되었다.(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구미, 수원, 인천, 시흥, 아산, 천안, 의정부, 성남, 고양, 군산, 청주, 전주, 진주, 창원, 울산, 목포, 순천, 강원, 제주 등)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이 2010년도에 생긴 이래로 4년에 걸쳐 진행이 되고 위의 3300명의 인원은 2014에 교육을 받은 인원이 아닌 교육이 개설되어 참가할 수 있는 인원이지만, 비교적 교육의 참석률이 높으며 이중 50%에 해당하는 교육생이 참가 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의 규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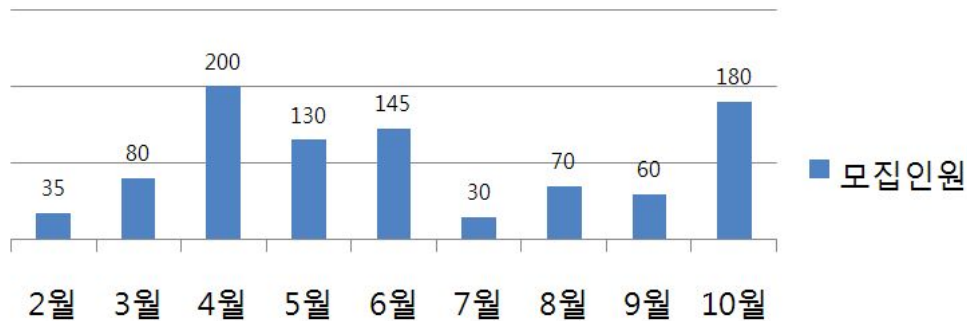
2010년 6월부터 2012년도 까지 교육을 받은 교육생은 6700여명으로 국제 원산지정보원의 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었지만 그 이후의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았고 2014년도에 개설된 교육생의 인원만 각종 주최·주관 사이트를 통한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여알 수 있었으며 1월은 35명, 2월은 302명, 3월은 630명, 4월은 150명, 5~6월은 220명, 7월은 735명, 8월은 297명, 9월은 498명, 10월은 295명으로 나타났다. 2014년도의 원산지관리사 시험이 4월, 8월, 11월에 대하여 3회 시행되었다.

그에 따라 해당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인 4월 시험에 해당하는 교육은 1~3월에 967명, 8월 시험에 해당하는 교육은 4~8월에 1,622명이고 11월 시험에 해당하는 교육은 조사가 진행되었던 10월까지의 조사를 통하여 진행된 결과는 9~10월까지 763명에 대하여 교육개설이 되었다.

담당자 대상교육 역시 관련 기업이나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교육으로서 FTA원산지결정기준의 복잡하고 어려움에 관하여 교육을 진행하여 FTA를 보다 더 쉽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유관기관 등에서 국비를 일부 지원하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림 2-4> 2014년도 담당자 대상교육의 모집 개설인원

담당자 대상교육(약 900명)



자료 : 연구자 작성

이 교육은 광역시를 기점으로 약 14개 지역의 상공회의소에서 교육이 실시되었다.(수원, 안양, 성남, 시흥, 평택, 파주, 경기동부, 청주, 대전, 충남북부, 창원, 포항, 울산, 부산) 주최·주관은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경제진흥원, FTA활용지원센터이며 원산지관리사 양성교육과 마찬가지로 위의 900명의 인원은 2014년도에 교육이 개설되어 참가할 수 있는 인원이다.

정부와 유관기관 등의 관련으로 국비를 일부 지원받아서 진행되어지므로 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기 전까지는 대외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협조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실제 교육에 참가했던 인원 등을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개설된 모집인원이 많은 만큼 담당자 관련 교육 역시 규모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교육생에 대하여 진행된 오프라인 교육에 대해서만 진행을 하므로 담당자의 대상으로한 교육은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진행되는지만 알아보고자 하였다.

2.3.2 원산지관리사의 배출 현황

<표 2-8> 원산지관리사의 배출 현황

	회차	응시	합격	합격률
10년도	1회	284	150	52.8%
	2회	383	91	23.7%
11년도	3회	624	194	31.1%
	4회	602	129	21.4%
12년도	5회	728	165	22.7%
	6회	552	156	28.3%
	7회	651	160	24.6%
13년도	8회	591	137	23.2%
	9회	652	189	29%
	10회	793	198	25%
14년도	11회	609	130	21.3%
	12회	1,012	313	30.9%
합계		7,481	2,012	26.89%

자료 : 연구자 작성

이처럼 FTA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그에 따른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다. 이 교육을 통하여 2010년 6월을 기점으로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많은 원산지관리사가 배출이 되었는데 초기에는 연 2회의 시험시행으로 실시되었으나 2012년 부터는 연 3회로 실시되었다. 처음 1회의 시험은 난이도 조절의 실패로 가장 높은

52.8%의 합격률을 보였고 4회의 21.4%가 가장 낮은 합격률이 나왔었으며, 최근 12회 시험부터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의무적으로 24시간 의무 교육을 들어야 했던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12회의 시험 응시생이 거의 2배로 증가하였다.

원산지관리사의 자격증은 민간자격증이였으나, 2013년도 8회 시험부터는 국가공인자격증으로 승격되어 국가 차원에서 원산지관리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이다. 이처럼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은 약 4년 반에 걸쳐 시험의 시행결과 응시생은 7,481명으로 합격생은 2,012명이 나왔으며 26.89%의 평균 합격률을 보였다. 앞으로 더욱 더 FTA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기에 시험의 응시생은 갈수록 증가할 것이라고 본다.



제 3장 원산지결정기준의 세부항목별 내용

제 1절 일반기준

3.1.1 직접운송원칙

직접운송요건을 두어 그 예외로 비체약국 경유시 허용되는 작업범위를 함께 규정하는 유럽형과 직접운송요건을 두지 않고 비체약국에서의 작업범위만을 규정하여 유럽형보다 요건을 완화하는 미주형이 있다.

먼저 직접운송원칙이란 FTA를 적용받기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말 그대로 물품을 직접 운송한다는 말로 수출국에서 수입국에 도착하기까지 중간에 다른 국가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운송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물품은 운송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크게 지리적인 이유와 운송상의 이유가 있다. 예를 들어 해안으로 이루어진 섬나라에서 내륙국가로 운송을 할 경우에는 한번의 운송이 아닌 해상운송과 내륙운송으로 운송수단을 변경하여 다시 운송을 진행하여야 하므로 직접운송의 예외는 꼭 필요한 것이다.

또한 경유시에는 세관의 통제하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하역 및 재선적, 재포장 또는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작업 이외의 가공이나 작업은 있어서는 안된다. 직접운송원칙의 요건을 살펴보면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터키, 페루와의 FTA에 대해서 직접운송요건이 존재하고 칠레와 미국과의 FTA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3국의 허용작업으로는 하선, 재선적, 크레이팅, 포장, 탁송품의 분리, 상품보관 분리 작업 등이 있고 아세안, 인도, 페루는 제 3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

다는 제한요건이 있는데 EU/터키는 단일탁송화물만 가능하며 아세안의 경우 비체약국 경유 사유를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만 한정한다는 제한 조건을 추가하고 있다. 그리고 경유시의 세관통제하에 진행되어야 하는 요건은 아세안을 제외한 모든 협정국가에서 적용되는 부분이다.

<표 3-1> FTA협정별 직접운송 요건의 비교

FTA	직접운송 요건	제3국 허용 작업	제한조건	제3국 세관통제 규정
싱가포르	○	하선, 재선적, 크레이팅, 포장, 재포장, 상품 보관 필요 작업		○
EFTA	○	하선, 재선적, 탁송품의 분리, 상품 보관 필요 작업		○
아세안	○	하선, 재선적, 상품 보관 필요 작업	지리적 혹은 운송이유, 제 3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 금지	X
인도	○	하선, 재선적, 상품 보관 필요 작업	제 3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 금지	○
EU/터키	○	하선 재선적, 상품 보관 필요 작업	단일탁송화물만 가능	○
페루	○	하선, 재선적, 재포장, 상품 보관 필요 작업	제 3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 금지	○
칠레	X	하선, 재선적, 크레이팅, 포장, 재포장, 상품 보관 필요 작업		○
미국	X	하선, 재선적, 상품 보관 및 운송 필요 작업		○

자료 : 국제원산지정보원

3.1.2 완전생산품

완전생산품이란 다른 국가의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한 국가의 재료를 가지고 모든 생산 활동이 하나의 국가에서 수행되어 생산되는 것이다. 그 물품에 대해 협정별, 품목별로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광물성생산품, 식물성생산품, 산 동물 및 그로부터 획득한 물품, 영역 내 수렵·어로·양식에 의

한 생산품, 영역(영해) 밖 바다 어획물 및 그 생산품에 관한 내용들로 구분되어 있다. 그 중 산 동물 및 그로부터 획득한 물품을 살펴보면 EFTA, 아세안, 인도의 경우에는 소나 돼지 같은 산 동물은 해당국가에서 출생되고 사육된 후 그로부터 획득되어야 하는 세 가지 요건을 두고 있고 미국의 경우 출생 및 사육이 되지 않더라도 산 동물로부터 획득한 것도 인정을 하지만 EU와 터키에서의 FTA는 사육된 산 동물로부터 획득한 경우도 완전생산품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영역(영해) 밖 바다 어획물 및 그 생산품의 관하여 완전생산품으로 인정하기 위한 역내선박 인정요건이 있는데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미국, 인도, 페루의 경우 어획을 하기 위한 선박이 당사국에 등록되어 국기를 게양을 해야만 완전생산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EFTA는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만 하면 되는 요건이지만 EU와 터키와의 FTA에서는 당사국에 등록하고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며 선박의 소유권이 적어도 50%를 당사국에서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자격요건을 두고 있다.

<표 3-2> FTA협정별 완전생산품 요건의 비교

FTA	내 용
칠레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만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싱가포르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만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EFTA/터키	당사국에서 완전 획득된 상품
아세안	전적으로 수출국 영역 내에서 전부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인도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미국/페루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EU	당사자내에서 완전히 획득된 제품

자료 : 국제원산지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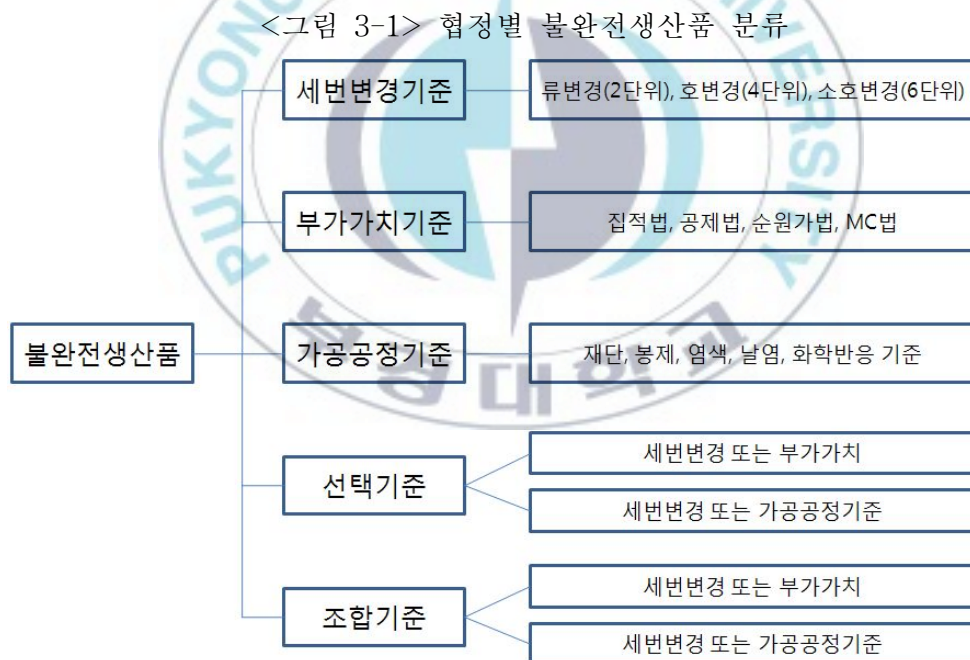
완전생산품의 기본적인 요건들을 살펴보면 앞에서 언급한 광물성생산품, 식물성생산품, 산 동물 및 그로부터 획득한 물품, 영역 내 수렵·어로·양식에 의한 생산품, 영역(영해) 밖 바다 어획물 및 그 생산품의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완전생산품의 요건들은 위의 표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협정문의 차이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FTA협정 체결국가와의 완전생산품에 관한 규정은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만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동일하며 아세안과 인도의 경우에는 수출 당사국 영역 내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3.1.3 불완전생산품

물품이 생산 활동을 거쳐 원산지를 인정받기위해서 역내가공원칙, 충분가공원칙을 통하여 생산이 되고 그 물품을 직접운송원칙에 의해서 운송되어야 한다. 그 운송된 물품이 하나의 국가에서 다른 국가의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생산되어 완전생산품의 인정 요건에 의해 잘 지켜진 경우에는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물품의 경우에는 불완전생산품으로서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 활동이 이루어져 해외 원재료와 국산 원재료를 혼용하여 물품의 생산 활동에 투입함으로써 완성된 물품의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 가공생산품에 해당 한다.

불완전생산품을 결정할 때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선택기준, 조합기준의 5가지 분류로 되어 있는데 선택기준과 조합기준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들을 선택 또는 조합하여 사용하는 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은 HS코드의 세번의 변경여부를 기초로 하여 원

산지를 결정하기에 신속, 정확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가공이 많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HS코드의 세번이 동일하게 분류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단점이 있다. 가공공정기준은 물품의 주요한 공정이 이루어진 국가가 어디인가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재단, 봉제, 염색, 날염, 화학반응 등의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으며, 부가가치기준 역시 집적법, 공제법, 순원가법, MC계산법에 의해서 부가가치가 어디서 가장 많이 이루어져 생산이 되었는지에 따라서 원산지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국산 원재료와 해외의 원재료의 가격 변화와 관련하여 원산지가 변할 수 있으며 다른 기준에 비해서 계산이 복잡하여 적용의 어려움이 있다.



자료 : 국제원산지정보원

3.1.4 역내가공원칙

물품이 원산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물품의 생산함에 있어서 모든 활동이 계약국 역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생산은 물품을 재배, 채굴, 수확, 어로, 번식, 덧사냥, 수렵, 제조, 가공 또는 조립들을 말한다.

오늘날 다양하고 광범위한 물품들이 존재하고 있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 물품들의 생산 활동을 역내에서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원산지 적용을 받기 위해 많은 제약이 있으며, 이 부분을 FTA협정 체결 국가별 허용요건을 명시함으로써 원활한 FTA활용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역내가공원칙은 물품의 생산 활동이 역내에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들의 생산 공장이 해외로 빠져 나가는 것을 막으며, 앞으로 보다 더 많은 국가들의 해외자본에 대한 역내투자를 활발하게 진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역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많은 기업들은 국제적으로 보다 나은 생산 효율성과 물품의 물류가 더욱 용이한 공급입지를 모색하여 생산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에게 유리한 국가와 장소로 기업의 생산 공장 이전을 하고 있다. 그렇기에 지나치게 역내가공 원칙을 고수할 경우 현재 구축되어 진행된 해외위탁가공 산업이 감퇴될 수 있다. 하물며 우리나라의 경우 특수한 지역인 개성공단을 통한 생산물품에 대해서 원산지 적용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정치적 위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입지와 값싼 노동력 등의 여러 가지 요건들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생산 활동에 있어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로 인하여 역내가공원칙에서는 각 FTA협정 체결국가 별로 일정한 조건하에서 역외가공을 허용하고 있다.

협정별 역외가공의 허용요건을 살펴보면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페루, EU/터키와의 FTA는 역외가공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칠레와 미국과의 FTA는 역외가공을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 설립 후 논의하기로 하였다. 품목의 제한은 싱가포르가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4,625품목에 대하여 한국에서 수출하는 물품에 역외가공을 허용하고 134품목에 대해서는 지역의 제한이 없이 가공비가 40%이하일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EFTA에서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 지역의 제한이 없으며, 267품목에 대해 가공비가 40%이하일 경우에 역외가공을 허용하고 그 외의 품목의 경우에는 가공비가 10% 이하일 경우 허용한다. 아세안은 아세안 국별 100품목, 인도는 108품목, 페루는 100품목에 대해서 개성공단에서 생산되어진 물품에 대해서만 역외가공을 허용하며 가공비는 40%이하가 되어야한다. 여기에서 가공비의 경우 역외에서 투입되는 재료비와 가공비, 운송비의 합계를 말한다.

<표 3-3> FTA협정별 역외가공 요건의 비교

구분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페루	EU/터키	칠레/미국
허용여부		o		o		o	o	o	o	x
허용 요건	지역	개성 공단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개성 공단	개성 공단	개성 공단	세부내용 은 추후 별도 위 원회에서 결정	미국의 경 우 한반도 역외가공 위원회 설 립 후 논의
	품 목	4,625	134	제한 없음	267	아세안 국별 100	108	100		
	가 공 비	한국에서 수출	40% 이하	10%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자료 : 국제원산지정보원

3.1.5 충분가공 원칙

<표 3-4> FTA협정별 충분가공 원칙 요건의 비교

FTA	근거규정	비 고
칠레	제 4.13조(불인정공정)	열거 + 예시
싱가포르	제 4.16조(불인정공정)	예시규정
EFTA	부속서 I 제 6조(불충분공정)	열거규정
아세안	부속서3 제 8조(일반품목 불인정공정), 부속3 제 2조(섬유류 불인정공정)	열거규정
인도	제 3.6조(불인정공정)	열거규정
미국	품목별기준에서 일부 규정	-
EU/터키	의정서 제 6조(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열거규정
페루	부속서3 제 3.5조(불인정공정)	열거규정

자료 : 국제원산지정보원

충분가공 원칙은 ‘실질적 변형 원칙’이라고도 하며 이 원칙은 물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두 국가 이상이 생산과정에 참가를 하였다면 실질적 변형이 어느 국가에서 일어났는지를 통하여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실질적 변형’이란 완전생산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불완전 생산품에 대해서도 포함이 된다. 이러한 재료들을 가지고 생산활동에 의해 물품이 만들어질 때 어느 국가의 생산과정에서 새로운 상품이라 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정도의 공정이나 가공을 ‘실질적 변형’이라고 한다. 그렇기에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없고 역내에서 단순한 가공만 이루어졌다면 특혜 관세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역내가공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물품을 생산 활동에 있어서 사용되는 재료들은 세계의 경제시장의 흐름

과 관련되어 물가나 품질 등의 이유로 한 국가에서 생산된 재료들만 사용하지 않고 여러 국가에서 생산된 재료를 가지고 물품을 생산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의 원산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원칙이다.

충분가공원칙의 불인정공정에 대하여 ‘열거’ 방식과 ‘예시’ 방식이 있는데 칠레의 경우 중요한 항목은 열거하고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예시로 규정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예시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그 외의 국가들은 열거규정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세안과 미국의 경우는 특이한 점이 있다. 아세안의 경우 일반품목의 불인정공정은 부속서3 제 8조로 정하고 섬유류 불인정공정은 부록3 제 2조로 정하는데 아세안과의 FTA협정문을 보면 제50류 내지 제63류 상품에 대해 단순한 공정을 수행하였을 경우 역내 부가가치기준 및 세번변경기준을 포함한 제5조(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다.

제 2절 품목별기준

3.2.1 세번변경기준

<그림 3-2> 세번변경기준의 분류



자료 : 국제원산지정보원

세번변경기준은 일반기준과 품목별기준으로 나뉘며 여기에서의 ‘일반기준’이란 물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으로 ‘FTA의 일반기준’과는 다른 것으로써 여기에는 통칙 1~6와 품목표의 HS협약과 FTA일반기준으로 되어있어 이 규정으로 세번변경기준이 결정된다.

또한 일반기준 외 품목별기준으로도 세번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데 공통기준과 개별기준이 있다. 공통기준은 FTA협정 국가마다 전체 품목에 대하여 공통적인 기준을 두고 있는지, 개별적인 기준을 두고 있는지가 차이점이 있다. 공통기준에는 일반 주와 부·류·호 주로 구분을 하고 개별기준은 2

단위(Change of Chapter), 4단위(Change of Tariff Heading), 6단위(Change of Tariff Sub-Heading), 조합기준, 선택기준이 있는데 아세안과 인도와의 FTA에서는 공통기준을 적용하는데 반해 나머지 FTA에서는 개별기준을 두고 있다.

3.2.2 가공공정기준

<그림 3-3> 가공공정기준의 분류



자료 : 국제원산지정보원

가공공정기준은 불완전생산품을 원산지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써 물품을 생산하는 공정 중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주요한 특성을 발생시키는 기술적 제조 및 가공작업을 규정하여 이에 해당하여 생산될 경우에 가공공정기준을 인정하는 것이다. 가공공정기준의 특징은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에 비해서 적용할 수 있는 품목의 범위가 작으며 공통기준으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 보통 어류, 식물성생산물, 석유제품, 화학제품, 플라스틱, 섬유제품 등 사용된다.

가공공정기준의 분류를 보면 일반기준과 품목별기준으로 나뉘며 일반기준은 누적기준에 대해서 규정되고 있는데 누적기준은 FTA원산지결정기준의 일반기준 중에서 특례기준에 속하는 기준으로써 칠레, 싱가포르, 미국, 페루와의 FTA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국가들과의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재료를 자국의 것으로 간주하는 누적기준이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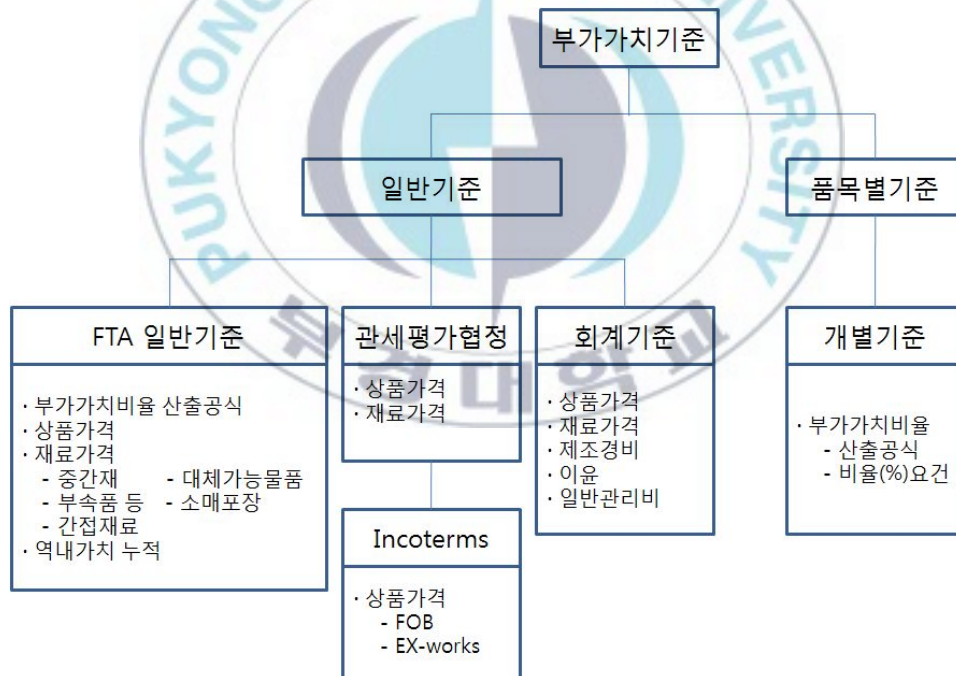
3.2.3 부가가치기준

부가가치기준은 세번변경기준, 가공공정기준과 마찬가지로 불완전생산품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다. 역내에서 생산된 물품이 역내에서 부가가치가 얼마만큼 창출되었는지를 FTA협정 국가별로 일정한 수준을 규정하여 이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단 한다. 이 부가가치율을 정할 때 특정국가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일정비율이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는 RVC방식(Regional Value Contents Method)과 특정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생산된 원재료의 가치가 일정비율 이하일 것으로 규정하는 MC방식(Import Contents Method)이 대표적인 방법으로 사용된다.

부가가치기준은 역내 부가가치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RVC법과 역외 부가가치가 일정수준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MC법이 있고 RVC법은 집적법(BU : Build-Up Method), 공제법(BD : Build-Do

wn Method), 순원가법(Net Cost Method)으로 나뉜다. 싱가포르, 인도는 공제법을 두고 있지만 칠레, 페루는 공제법과 집적법을 두고 수출자가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세안은 공제법과 집적법 중 각 당사국이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의 경우는 공제법과 집적법, 순원가법 중 수출자가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순원가법의 경우에는 자동차상품에 대해서만 가능한 점을 유의해야 한다. EFTA와 EU, 터키에서는 공장도 가격에서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는 MC방식만 사용가능하다.

<그림 3-4> 부가가치기준의 분류



자료 : 국제원산지정보원

부가가치기준의 분류를 보면 일반기준과 품목별기준이 있는데 상품가격이나 재료가격 및 경기와 관리비를 부가치기준의 규정대로 판단하기 위하

여 FTA일반기준과 관세평가협정, Incoterms, 회계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다. 여기서 상품가격을 계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코텀즈는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Trade Terms)으로써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공장도가격(EXW : Ex-works)와 본선인도가격(FOB : Free On Board)가 사용되는데 EFTA, EU는 EXW가격 기준이고 아세안, 인도, 페루와의 FTA는 FOB를 사용한다. 나머지 FTA협정 국가와는 FOB와 근접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제 3절 특혜(보충)기준

3.3.1 누적기준

누적기준은 국내산이 아닌 FTA 상대국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물품을 생산한 경우에 그 원재료를 국내산 원재료로 간주하여 원산지를 인정하여 특혜 관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기준에는 회원국이 아닌 일정 국가들에 의해 공급된 재료도 일정 조건하에 역내산으로 간주하는 유사누적과 협정 상대국 원산지 상품이나 재료를 인정하는 양자누적이 있고, 누적의 적용시 단일 특혜 영역으로 간주되는 복수국가간 적용하는 방식으로써 완전누적이 있는데 이는 협정당사국들에서 수행된 모든 작업이나 가공을 최종품의 원산지결정시 고려하여 당사국에서 수출될 때 누적대상이 되는 재료나 상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누적이 있

다. 우리나라 FTA에서는 양자누적만을 허용하고 있다. 역내에서 다수의 생산자에 의해 여러 제조단계를 거칠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모든 부가가치는 국내 최종단계의 생산자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간주한다.¹³⁾

누적기준을 FTA협정별로 살펴보았을 때 현재 체결되어 발효된 국가 모두 상대국 원산지재료를 상품생산국의 재료로 간주하는 재료누적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지만 역내국에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생산자에 의해 생산된 경우 전 단계 생산자 수행 생산은 최종 생산자가 수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공정누적에 대해서 칠레, 미국, 싱가포르, 페루에 대해서만 인정함으로써 인도, 아세안, EFTA, EU, 터키와의 FTA에서는 재료누적의 요건으로 상대국 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최종물품을 생산한 계약당사국에서 불인정공정 이상의 공정을 거치는 경우로 규정하였다.

<표 3-5> FTA협정별 누적기준 요건의 비교

구분	칠레	미국	싱가포르	페루	인도	아세안	EFTA/EU/터키
재료누적	○	○	○	○	○	○	○
공정누적	○	○	○	○	X	X	X
근거규정	제4.5조	제6.5조	제4.9조	제6.6조	제3.7조	제7조	제3조

자료 : 국제원산지정보원

13) 김무한, 「FTA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른 활용 전략에 관한 연구」, 건국대 박사학위 논문, 2010. 6. p.53.

3.3.2 최소허용기준(미소기준)

최소허용기준은 미소기준이라고도 하는데 생산 활동에 있어서 물품을 생산할 때 비원산지 재료가 차지하는 가격이나 중량이 미미할 경우에는 세번이 변경되지 않거나 원산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기준이다. 미미한 가격이나 중량에 대해서 어느 기준까지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반품목은 가격기준으로 섬유류는 중량기준으로 허용범위를 인정하고 농수산물의 경우는 최소허용기준의 허용범위를 최소한 한다.

<표 3-6> FTA협정별 최소허용기준 요건의 비교

구 분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EFTA	미국	EU/터키	페루
가격 기준	일반 품목	8%	10%		10%	10%	10%		10%
	농수 산물	1류~24 류 CTSH 충족하 면 적용 가능	1류~14류 적용제외 15류~24 류 CTSH 충족하면 적용가능	10%	1류~14 류 적용 제외	1류~24 류 CTSH 충족하 면 적용 가능	1류~24류 CTSH 충 족하면 적 용가능(일 부제외)	10%	1류~14 류 적용 제외
중량 기준	섬유	8%	8%	10%	7%	10%	7%	8~30% 일부 가격 기준	10%

자료 : 국제원산지정보원

최소허용기준에 대해서 칠레, 싱가포르, 인도, EFTA, 미국에 대해서는 일반품목과 농수산물, 섬유로 구분하여 최소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아세안, EU, 터키는 농수산물 역시 일반품목으로 포함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 있다. 가격기준에서 최소허용기준의 허용은 칠레에서만 8%의 기준으로 허용하고, 나머지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EFTA, 미국, EU,

터키, 페루에서는 10%의 기준으로 허용하고 있다. 섬유의 기준은 칠레와 싱가포르를 8%를 허용하고 아세안과 페루는 10%를 허용한지만 인도와 미국은 7%를 허용한다. 또한 EU와 터키는 8~30%의 일부가격 기준으로 허용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점이 다른 협정국가와 허용기준의 범위 차이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3.3.3 중간재

물품을 생산함에 있어 재료는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로 나뉘는데 이 재료들을 가지고 생산 활동을 통하여 물품이 만들어지게 된다. 중간재 규정은 이렇게 만들어진 물품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도 원산지재료와 함께 원산지재료비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간재 기준으로 이는 원산지재료비 계상기준을 완화하여 특혜대상물품의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중간재를 생산하는 자가생산자를 외부조달자보다 불리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표 3-7> FTA협정별 중간재 요건의 비교

구 분	칠레	싱가포르	미국	페루	EFTA	아세안/인도	EU/터키
중간재 인정여부	○	○	○	○	○	X	○
대상물품	자가 생산품	자가 생산품	자가 생산품	역내 생산품	역내 생산품	X	역내 생산품
중간재 지정의무	○	○	X	X	X	X	X
근거규정	제4.1조 제4.4조	제4.1조 제4.7조	제6.2조 제6.3조	제6.2조 제6.3조	제3.4조	X	제2조1항

자료 : 국제원산지정보원

중간재의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칠레, 싱가포르, 미국, 페루, EFTA, EU, 터키에서 인정하고 있고, 중간재의 대상물품은 칠레, 싱가포르, 미국에서는 자가 생산품에 대해서만 인정하지만 페루, EFTA, EU, 터키에서는 역내 생산품에 대해서만 중간재의 대상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중간재의 지정의무는 칠레와 싱가포르에서는 있다고 하지만 미국, 페루, EFTA, EU, 터키에서는 중간재의 지정 의무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세안과 인도에 대해서는 중간재 자체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상물품과 지정의무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3.3.4 대체가능물품

대체가능 물품은 그 특성, 기능, 구조 등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물품 또는 재료로 곡물, 과일, 볼트, 너트, 베어링, 타이어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는 국산품과 수입품을 혼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혼용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의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며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의 4가지 방법으로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¹⁴⁾ 이는 원산지를 판단함에 있어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을 물리적이거나 회계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게 구분하여 보관하는데 기술적인 어려움과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고관리기법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인정되는 것이다.

14) 김기영, 「한·인도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한남대 박사학위 논문, 2009. p.37.

<표 3-8> FTA협정별 대체가능물품 요건의 비교

구 분	칠레	싱가포르	미국	페루	아세안	인도	EFTA	EU/터키
적용 범위	상품·재료	상품·재료	상품·재료	상품·재료	재료	재료	재료	재료
근거 규정	제4.7조	제4.11조	제6.7조	제3.8조	제14조	제3.12조	제11조	제11조

자료 : 국제원산지정보원

대체가능물품은 칠레, 싱가포르, 미국, 페루의 FTA에서의 적용범위는 상품과 재료 모두 적용하고 있지만 아세안, 인도, EFTA, EU, 터키는 재료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3.5 간접재료

간접재료 또는 중립요소란 상품의 생산, 시험 또는 검사과정에 사용되지만,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는 물품 또는 상품생산과 관련된 건물의 유지나 설비의 작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FTA 협정에 따라 간접재료 또는 중립요소로 표현하고 있으나 국내법에서는 간접재료로 표현하고 있다.¹⁵⁾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미국, EU, 터키, 페루와의 FTA에서는 원산지의 결정할 때 있어서 간접재료는 재료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세번변경기준의 적용시에는 비원산지물품이더라도 세번변경 요건을 충

15) 김순옥, 「한국 FTA 부가가치 원산지결정기준의 효율적 적용에 대한 연구」 인천대 석사학위 논문, 2011. p.42.

족할 필요가 없으며 부가가치기준 적용시에도 재료를 제조간접비에 포함시키므로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을 쉽게 하는데 칠레와의 FTA에서는 원산지 재료로 간주한다.

<표 3-9> FTA협정별 간접재료 요건의 비교

구 분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미국	EU/터키	페루	칠레
간접재료 지위	'재료'로 보지 않음 (세번변경기준 적용시 무시하고 결정하고, 부가가치기준 적용시 제조경비에 계상)							원산지 재료로 간주
근거 규정	제4.8조	제10조	제13조	제3.5조	제6.12조, 제6.22조 (정의)	제10조, 제6조	제3.13조	제4.1조(정의) 제4.9조

자료 : 국제원산지정보원

3.3.6 부속품·예비부분품·공구

원산지 규정에서 부속품·예비부분품·공구라 함은 상품에 물리적으로 부착됨에 관계없이 상품과 함께 인도되고, 상품의 운송, 보호, 유지 또는 상품의 청결, 조립, 수선 또는 사용을 위한 상품 또는 소모품이나 상품의 호환가능한 부품의 대체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자전거 도구세트, 휴대폰의 충전기, 청소기의 집진봉투, 안경 케이스, 피아노의 건반 커버 등이 있고 당해 FTA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본 상품과 같은 상품장에 의하여 거래되고 그 수량과 금액이 통상적인 수준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¹⁶⁾ 그렇기에 함께 제공되는 부속품이 가치가 통상적

16) 김순옥, 「한국 FTA 부가가치 원산지결정기준의 효율적 적용에 대한 연구」 인천대 석사학위 논문, 2011. p.44.

인 경우보다 높을 경우에는 부속품으로 인정되지 않고 개별적인 상품으로 인정하여 한다.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모든 FTA의 체결국가에서는 무시를 하고, 부가가치기준을 적용시에는 아세안을 제외한 인도, 칠레, 싱가포르, 미국, EFTA, EU, 터키, 페루와의 FTA에서는 원산지별 구분하여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3-10> FTA협정별 부속품·예비부분품·공구 요건의 비교

구 분	아세안	인도	칠레	싱가포르	미국	EFTA	EU/터키	페루
세번변경기준 적용시	무시							
부가가치기준 적용시	무시	원산지별 구분 계상						
근거규정	제12조	제3.9조	제4.8조	제4.12조	제6.8조	제8조	제8조	제3.10조

자료 : 국제원산지정보원

3.3.7 소매용 포장·용기

소매활동을 하기 위한 포장은 가격을 잘 보이거나 쉽게 눈에 띄게 하기 위한 가격표시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겉포장을 말하며,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내장 포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만일 일반적인 캔디류가 부가가치가 높게 인정되는 도자기 안에 넣어져 판매되고 있다면 이 도자기의 가치가 캔디보다 높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FTA협정에서는 원산지 판단을 위한 소매용·용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세번변경기준 적용시에는 소매포장에 대해서 모든 협정이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가가치기준 적용

시에는 모든 협정이 원산지별 구분 계상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표 3-11> FTA협정별 소매용 포장·용기 요건의 비교

구 분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미국	페루	EFTA	EU/터키
소매 포장	세번변경기준 적용시	무시(세번변경기준 요건 충족의 여부 불문)							
	부가가치기준 적용시	원산지별 구분 계상							
근거규정		제4.10조	제4.13조	제11조	제3.10조	제6.10조	제3.11조	제7조2	제7조

자료 : 국제원산지정보원

3.3.8 운송 포장·용기

<표 3-12> FTA협정별 운송 포장·용기 요건의 비교

구 분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미국	페루	EFTA	EU/터키
운송 포장	세번변경기준 적용시	무시							
	부가가치기준 적용시								
근거규정		제4.11조	제4.14조	제11조	제3.11조	제6.11조	제3.12조	-	-

자료 : 국제원산지정보원

운송을 위한 포장은 수출입물품을 운송도중 안전하게 보호하고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살물(bulky cargo)이 아닌 개품운송인 경우 필수적으로 행해지며, 포장은 값싸고 튼튼하여야 하고 또한 계약물품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포장조건에서는 개장, 내장, 외장 등 포장방법과 재

질 등에 대해 거래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¹⁷⁾ 이러한 포장에 이루어진 재료들에 대해서 원산지를 규정하고있는 근거규정은 있지만 체결된 FTA에서는 이러한 운송을 위한 포장에 대해서는 무시를 하고 있다.

3.3.9 세트물품

<표 3-13> FTA협정별 세트물품 요건의 비교

구 분	EFTA/EU/터키	미국		페루	칠레/싱가포르/ 아세안/인도
		일반품목	섬유류		
세트물품 예외 인정 여부	○	○	○	○	X
비원산지물품 허용한도	공장도 가격의 15% 이하	FOB 가격의 15% 이하	FOB 가격의 10% 이하	FOB 가격의 15% 이하	X
근거규정	제 9조	제6.9조	제4.2조 8항	제3.9조	X

자료 : 국제원산지정보원

세트물품은 서로 다른 성질의 물품을 특정목적을 위해 하나로 조합한 것으로 여기에는 대표적인 예로 이발세트와 제도키트 등이 있다. 이처럼 다른 HS코드를 가지는 개별의 물품들이 세트로 함께 구성되어져 원산지를 인정받기 위한 기준이다. 이 규정에서 원산지 판단하는데 있어서 결정들은 세트의 구성 모두를 한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물품별로 하므로 세트물품도 그 구성품 별로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세트물품 예외의 인정여부는 EFTA, EU, 터키, 미국, 페루에서만 인정하고 있으며, 칠레와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세트물품 예외 인정하고 있는 협정들을 보면 EFTA, EU, 터키에서는 공장도 가격의

17) 윤광운·노현수, 「제2판 무역실무」, 탐북스, 2012,2,20, p.163.

15% 이하에 대해서만 비원산지물품을 허용한도로 규정하고 미국과 페루의 경우에는 FOB 가격의 15% 이하에 대해서만 비원산지물품의 허용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의 섬유류에 대해서만 FOB 가격의 10% 이하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3.3.10 재수입물품

재수입 물품은 우리나라의 물품이 해외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우리나라로 재수입되었다면 원산지를 적용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FTA와 관련하여 각 협정들이 어떻게 규정되어있는지를 보면 EFTA, EU, 인도, 페루에서는 비당사국으로 수출되었다가 원상태로 재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그대로 인정하고 아세안과의 FTA에서는 국내법령에 따른다고 규정되어있다. 또한 칠레, 미국, 싱가포르와의 FTA에서는 원상태 재수입물품에 대한 특례조항이 없으므로, 특혜관세 목적상 재수입한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예컨대 한국에서 생산한 가전제품을 일본으로 수출하였다가 원상태로 다시 반송된 물품을 스위스로 재수출할 경우 동 가전제품의 원산지는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수입자는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의 동일성을 입증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동 특례조항은 특혜관세 적용대상 물품의 범위를 국경에 고정시키지 않고 탄력적으로 확대시킴으로써 역내에서 실질적으로 생산된 물품의 교역을 촉진시킨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관의 행정부담 증가와 함께 관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¹⁸⁾

제 4장 원산지결정기준 세부항목별 이해도에 차이 분석

제 1절 설문지 작성개요 및 조사방법

4.1.1 설문지 작성개요

설문지의 작성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작성되었다. 원산지결정기준의 분류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통한 조사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원산지관리사 양성교육에 이용되는 자료를 토대로 원산지결정기준의 세부항목별 분류를 일반기준과 품목별기준으로 나누었다. 일반기준에는 기본원칙과 특례원칙이 있는데 기본원칙에는 완전생산품과 불완전생산품, 직접운송원칙이 있으며 불완전생산품에는 실질적변형기준에 대한 역내가공원칙과 충분가공원칙이 있다. 그 외의 경우에도 원산지를 인정해주기 위하여 특례(보충)기준의 누적기준, 최소허용기준, 중간재, 대체가능물품, 간접재료, 부속품·예비부분품·공구, 소매용 포장·용기, 운송 포장·용기, 세트물품, 재수입물품의 10가지 기준들이 있다. 품목별기준의 세번변경기준, 가공공정기준, 부가가치기준이 있는데 이러한 각 세부항목별로 18가지 변수를 가지고 설문지를 진행하였다.

피교육생 대상으로 한 설문지는 원산지결정기준의 세부항목별 기준들을 이해함에 있어서 위의 18가지 변수에 대해 어렵지않다부터 매우어렵다까지 리커트 5점 척도로 설문지를 진행하였지만, 불완전생산품은 완전생산품이

18) 이영달, 「원산지결정기준」, 국제원산지정보원, 2012.2 p.235.

아닌 역내가공원칙과 충분가공원칙에 대하여 원산지를 결정할 때를 포괄하는 부분으로 본문에서는 불완전생산품의 조사값을 제외한 17가지 변수들에 대해서 적용하였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는 전문가 입장에서 각각의 세부 기준과 원칙을 교육생들과 업체를 이해시키거나 실무적으로 일을 진행할 때 이해하기 어려움을 느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정도를 어렵지않다부터 매우어렵다까지를 리커트 5점 척도로 설문지를 진행하였다.

또한 각 집단의 설문조사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사항들의 원인을 알기 위하여 선택문항과 기타 서술문항을 추가로 작성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4.1.2 설문지 조사방법

<표 4-1> 피교육생 설문지 분석

	빈도	퍼센트
설문지배포	102	-
회수	97	100%
불성실 응답	12	12.37%
유효 응답	85	87.63%

자료 : 연구자 작성

피교육생의 대상으로 한 설문은 다양한 원산지관련 교육 중 원산지관리사 양성교육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으며 2014년 하반기 교육 중에 7월~9월까지 실시된 부산, 경주, 구미, 대구 교육장에서 설문을 배포하였다. 이 교육들은 원산지관리사를 취득하기 위한 피교육생들이 교육을 듣고 세관공무원이나 관세사들이 강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었다. 피교육생 집단에

게는 102부 배포하여 97부를 회수하고 불성실하게 작성이 되었거나 응답의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12부를 제외한 85부를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4-2> 전문가 설문지 분석

	빈도	퍼센트
설문지배포	54	-
회수	51	100%
불성실 응답	3	5.88%
유효 응답	48	94.12%

자료 : 연구자 작성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은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적용, 심사, 강의 하는 전문가 집단(세관공무원, 관세사, 교육강사 등)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54부 배포하여 51부를 회수하고 불성실하게 작성이 되었거나 응답의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3부를 제외한 48부를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제 2절 설문지 분석 및 결과

4.2.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분석

1) 피교육생의 인구통계학적 분석

<표 4-3> 피교육생 인구통계학적 분석

성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남자	40	47.1	47.1	47.1
	여자	45	52.9	52.9	100.0
	합계	85	100.0	100.0	

연령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20대	54	63.5	63.5	63.5
	30대	23	27.1	27.1	90.6
	40대	7	8.2	8.2	98.8
	50대 이상	1	1.2	1.2	100.0
	합계	85	100.0	100.0	

학력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고등학교	15	17.6	17.6	17.6
	전문대	1	1.2	1.2	18.8
	대학교	67	78.8	78.8	97.6
	대학원	2	2.4	2.4	100.0
	합계	85	100.0	100.0	

근무기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근무경험없음	63	74.1	74.1	74.1
	1년 이하	13	15.3	15.3	89.4
	2년 이하	1	1.2	1.2	90.6
	3년 이하	2	2.4	2.4	92.9
	4년 이하	5	5.9	5.9	98.8
	5년 이상	1	1.2	1.2	100.0
	합계	85	100.0	100.0	

자료 : 연구자 작성

피교육생의 성별은 남자 47.1%와 여자가 52.9% 으로 거의 비슷한 비율

을 보였으나, 남자보다 여자의 인원이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20대가 63.5%를 차지하고 30대 27.1%, 40대 8.2%, 50대 이상이 1.2%를 차지하였다. 20대와 30대가 전체의 90%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력은 재학중인 경우를 포함하여 진행하였으며, 고등학교가 17.6%, 전문대 1.2%, 대학교 78.8%, 대학원 2.4%로 대학교를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근무기간에 대한 문항은 일반 경력은 포함하지 않고, FTA원산지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한정하여 물었다. 74.1%가 FTA와 관련된 근무경험이 없다고 하였고 15.3%가 1년 이하, 1.2%는 2년 이하, 2.4%는 3년 이하, 5.9%는 4년 이하, 1.2%는 5년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이하의 경력이 가장 많으며 3년 이하의 비율이 뒤를 이었고 나머지는 비슷한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전문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전문가의 성별은 남자 66.7%와 여자가 33.3%으로 여자보다 남자의 인원이 많고 연령은 20대가 12.5%를 차지하였으며, 30대 41.7%와 40대 31.3%로 30~40대의 비율이 컸으며, 50대 이상은 20대와 크게 차이가 없는 14.6%를 차지하였다. 30대와 40대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력은 재학중인 경우를 포함하여 진행하였으며, 고등학교가 2.1%, 대학교 72.9%, 대학원 25%로 대학교를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대학원을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인원이 25% 것을 보아 전문가의 학력이 고학력자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TA와 관련한 근무기간은 33.3%가 1년 이하로 가장 많았고, 18.8%는 2년 이하, 14.6%는 3년 이하,

16.7%는 4년 이하, 16.7%는 5년 이상으로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여 1년 이하의 근무경력을 가진 인원이 가장 많았고 그 외의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상의 경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14.6%에서 18.8%까지 분포를 보여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4> 전문가 인구통계학적 분석

		성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남자	32	66.7	66.7	66.7
	여자	16	33.3	33.3	100.0
	합계	48	100.0	100.0	

		연령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20대	6	12.5	12.5	12.5
	30대	20	41.7	41.7	54.2
	40대	15	31.3	31.3	85.4
	50대 이상	7	14.6	14.6	100.0
	합계	48	100.0	100.0	

		학력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고등학교	1	2.1	2.1	2.1
	대학교	35	72.9	72.9	75.0
	대학원	12	25.0	25.0	100.0
	합계	48	100.0	100.0	

		근무기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년 이하	16	33.3	33.3	33.3
	2년 이하	9	18.8	18.8	52.1
	3년 이하	7	14.6	14.6	66.7
	4년 이하	8	16.7	16.7	83.3
	5년 이상	8	16.7	16.7	100.0
	합계	48	100.0	100.0	

자료 : 연구자 작성

4.2.2 원산지결정기준별 난이도 수준 분석

<표 4-5> 세부항목별 변수들의 집단통계량

		집단통계량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직접운송원칙	전문가	48	1.90	.905	.131
	피교육생	85	1.82	.804	.087
완전생산품	전문가	48	1.69	.829	.120
	피교육생	85	1.89	.887	.096
역내가공원칙	전문가	48	1.79	.849	.123
	피교육생	85	2.34	.958	.104
충분가공원칙	전문가	48	2.25	.836	.121
	피교육생	85	2.27	1.028	.112
세번변경기준	전문가	48	2.27	.984	.142
	피교육생	85	2.56	1.159	.126
가공공정기준	전문가	48	2.92	1.088	.157
	피교육생	85	2.96	.969	.109
부가가치기준	전문가	48	3.35	1.021	.147
	피교육생	85	3.25	1.022	.111
누적기준	전문가	48	2.88	1.064	.154
	피교육생	85	2.78	1.004	.109
최소허용기준	전문가	48	2.58	.942	.136
	피교육생	85	2.59	.967	.108
중간재	전문가	48	3.60	1.088	.157
	피교육생	85	2.76	.921	.100
대체가능물품	전문가	48	3.29	.922	.133
	피교육생	85	2.54	1.018	.110
간접재료	전문가	48	2.85	.989	.143
	피교육생	85	2.64	.988	.107
부속품예비부품공구	전문가	48	2.85	1.072	.158
	피교육생	85	2.71	1.010	.110
소매용포장용기	전문가	48	2.44	1.009	.146
	피교육생	85	2.40	.941	.102
운송포장용기	전문가	48	2.15	.989	.143
	피교육생	85	2.13	.936	.102
세트물품	전문가	48	2.94	1.080	.156
	피교육생	85	2.36	.988	.107
재수입물품	전문가	48	2.73	1.180	.170
	피교육생	85	2.36	.962	.104

자료: 연구자 작성

FTA원산지결정기준 분류에서 17가지 변수들을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설문하여 얻은 값을 t검증 통한 분석으로 각 변수에 대한 이해도나 어려움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분석한 집단통계량을 살펴보면 각 변수

들에 대해서 평균값을 알 수 있다. 이 값이 클수록 어렵거나 이해하기 힘든 것을 의미한다. 이 평균값의 순서를 나열하여 각각의 집단끼리 평가는 가능하지만 두 집단을 하나로 연관지어 통계적인 의미를 두고 서로를 비교하면 안 된다. 각 집단의 응답자가 다르고 각 변수들간의 연관성을 포함하여 조사한 값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빈도적인 수준에서 나열한 순위가 어떤 변수들의 평균값이 높게 나오고 낮게 나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4-6> 피교육생의 어렵게 느끼는 순서

순위	변수	평균값
1	부가가치기준	3.25
2	가공공정기준	2.96
3	누적기준	2.78
4	중간재	2.76
5	부속품·예비부분품	2.71
6	간접재료	2.64
7	최소허용기준	2.59
8	세번변경기준	2.56
9	대체가능물품	2.54
10	소매용포장용기	2.4
11	세트물품	2.36
12	재수입물품	2.36
13	역내가공원칙	2.34
14	충분가공원칙	2.27
15	운송포장용기	2.13
16	완전생산물	1.89
17	직접운송원칙	1.82

자료: 연구자 작성

<표 4-7> 전문가가 어렵게 느끼는 순서

순위	변수	평균값
1	중간재	3.6
2	부가가치기준	3.35
3	대체가능물품	3.29
4	세트물품	2.94
5	가공공정기준	2.92
6	누적기준	2.88
7	간접재료	2.85
8	부속품·예비부분품	2.85
9	재수입물품	2.73
10	최소허용기준	2.58
11	소매용포장용기	2.44
12	세번변경기준	2.27
13	충분가공원칙	2.25
14	운송포장용기	2.15
15	직접운송원칙	1.9
16	역내가공원칙	1.79
17	완전생산물	1.69

자료: 연구자 작성

피교육생의 평균값의 순위를 보면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누적기준, 중간재, 부속품·예비부분품·공구, 간접재료, 최소허용기준, 세번변경기준, 대체가능물품, 소매용포장용기, 세트물품, 재수입물품, 역내가공원칙, 충분가공원칙, 운송포장용기, 완전생산물, 직접운송원칙의 순으로 나왔는데

피교육생은 아무래도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계산식을 많이 활용하여 판단하는 부가가치기준과 가공공정기준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을 느낀 반면, 한 국가나 한 역내에서 생산된 제품일 경우에 원산지를 인정하는 완전 생산품과 해당 당사국간의 운송으로 인한 원산지인정을 받는 직접운송원칙이 쉽게 이해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문가 집단에서는 피교육생 집단과 마찬가지로 계산식을 많이 활용하여 원산지를 판단하는 부가가치기준과 가공공정기준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지만 피교육생 집단과 달리 중간재, 대체가능물품, 세트물품 같은 특례(보충)기준에 대해서 이해도나 어려움의 정도가 높다고 하였다. 그 외의 부분은 피교육생 집단과 비슷한 정도를 보이고 있다.



4.2.3 T검정

<표 4-8> 피교육생과 전문가집단의 차이를 T검정을 통한 분석($p < 0.05$)

		독립표본검정								
		Levene의 등분산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측)	평균차	차이의 표 준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역내가공원칙	등분산이 가정됨	1.398	.239	-3.306	131	.001	-.550	.166	-.878	-.221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3.419	107.684	.001	-.550	.161	-.868	-.231
충분가공원칙	등분산이 가정됨	2.435	.121	-.118	131	.906	-.021	.174	-.365	.324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125	114.551	.901	-.021	.165	-.346	.305
직접운송원칙	등분산이 가정됨	1.471	.227	.476	131	.635	.072	.152	-.228	.373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460	88.457	.646	.072	.157	-.240	.384
완전생산물	등분산이 가정됨	.021	.884	-1.321	131	.189	-.207	.156	-.516	.103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1.346	103.223	.181	-.207	.154	-.511	.098
세번변경기준	등분산이 가정됨	2.309	.131	-1.480	131	.141	-.294	.199	-.687	.099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1.549	111.323	.124	-.294	.190	-.670	.082
가공공정기준	등분산이 가정됨	3.039	.084	-.263	131	.793	-.048	.183	-.410	.314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254	88.580	.800	-.048	.189	-.424	.328
부가가치기준	등분산이 가정됨	.204	.652	.581	131	.563	.107	.184	-.258	.472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581	97.775	.563	.107	.184	-.259	.473
누적기준	등분산이 가정됨	.036	.849	.532	131	.596	.099	.185	-.268	.465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523	92.999	.602	.099	.188	-.275	.473
최소허용기준	등분산이 가정됨	.051	.822	-.028	131	.977	-.005	.173	-.347	.337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029	99.866	.977	-.005	.172	-.346	.336
중간재	등분산이 가정됨	2.643	.106	4.726	131	.000	.839	.178	.488	1.191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4.514	85.069	.000	.839	.186	.470	1.209
대체가능물품	등분산이 가정됨	.761	.385	4.221	131	.000	.750	.178	.399	1.102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4.341	105.969	.000	.750	.173	.408	1.093
간접재료	등분산이 가정됨	.115	.735	1.228	131	.222	.219	.178	-.134	.571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1.227	97.407	.223	.219	.178	-.135	.573
부속품에비부분품	등분산이 가정됨	.168	.683	.796	131	.428	.148	.186	-.220	.517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782	92.877	.436	.148	.190	-.228	.525
소매용포장용기	등분산이 가정됨	.826	.365	.215	131	.830	.038	.174	-.307	.382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211	92.119	.833	.038	.178	-.316	.391
운송포장용기	등분산이 가정됨	.542	.463	.095	131	.924	.016	.172	-.325	.358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094	93.210	.926	.016	.175	-.331	.364
세트물품	등분산이 가정됨	1.246	.266	3.108	131	.002	.573	.184	.208	.937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3.030	90.465	.003	.573	.189	.197	.948
재수입물품	등분산이 가정됨	3.824	.053	1.931	131	.056	.364	.189	-.009	.738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1.824	82.370	.072	.364	.200	-.033	.762

자료 : 연구자 작성

FTA원산지결정기준의 일반기준에 해당하는 17가지 변수들에 대해서 두 집단간의 어려움이나 이해도와 관련하여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T검정을 활용하여 피교육생 집단과 전문가 집단의 차이를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전문가를 A집단으로 피교육생을 B집단으로 하여 A집단에 대한 B집단 간의 차이를 t값을 분석한 결과 역내가공원칙($t=-3.419$), 충분가공원칙($t=-0.125$), 직접운송원칙($t=0.460$), 완전생산물품($t=-1.346$), 세번변경기준($t=-1.149$), 가공공정기준($t=-0.254$), 부가가치기준($t=0.581$), 누적기준($t=0.523$), 최소허용기준($t=-0.029$), 중간재($t=4.514$), 대체가능물품($t=4.341$), 간접재료($t=1.227$), 부속품·예비부분품·공구($t=0.782$), 소매용 포장·용기($t=0.211$), 운송 포장·용기($t=0.094$), 세트물품($t=3.030$), 재수입물품($t=1.824$)의 결과 값이 나왔다.

유의수준을 ($P<0.05$)으로 분석을 하였고 이는 95% 확률에서 두 집단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유의수준에서 변수들을 분석한 결과 역내가공원칙($p=0.001$), 충분가공원칙($p=0.901$), 직접운송원칙($p=0.646$), 완전생산물품($p=0.181$), 세번변경기준($p=0.124$), 가공공정기준($p=0.800$), 부가가치기준($p=0.563$), 누적기준($p=0.602$), 최소허용기준($p=0.977$), 중간재($p=0.000$), 대체가능물품($p=0.000$), 간접재료($p=0.223$), 부속품·예비부분품·공구($p=0.436$), 소매용 포장·용기($p=0.833$), 운송 포장·용기($p=0.926$), 세트물품($p=0.003$), 재수입물품($p=0.072$)의 값으로 나왔다. 이 17가지 변수들에서 유의수준 ($P<0.05$)에 해당하는 변수는 역내가공원칙($p=0.001$), 중간재($p=0.000$), 대체가능물품($p=0.000$), 세트물품($p=0.002$)의 4가지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피교육생 집단과 전문가 집단에서 느끼는 어려움이나 이해도가 95%의 수준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표 4-9> t검정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원산지결정기준과 난이도 평균값

원산지결정기준	t검정 결과		난이도 평균	
	유의확률 ($p < 0.05$)	t값	피교육생	전문가
역내가공원칙	0.001	-3.419	2.34	1.79
중간재	0.000	4.514	2.76	3.6
대체가능물품	0.000	4.341	2.54	3.29
세트물품	0.003	3.030	2.36	2.94

자료 : 연구자작성

t검정을 통하여 두 집단간 차이가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값을 가지는 중간재, 대체가능물품, 세트물품, 역내가공원칙 4가지 변수 중에서 중간재와 대체가능물품, 세트물품의 3가지 변수는 전문가의 평균값이 교육생의 평균값 보다 높았으나 역내가공원칙에서는 피교육생의 평균값이 전문가의 평균값 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른 결과 값은 중간재($t=4.514$), 대체가능물품($t=4.341$), 세트물품($t=3.030$)의 t값은 양의부호이기 때문이며 역내가공원칙($t=-3.419$)은 음의부호이기 때문이다.

t값이 양의부호와 음의부호가 나온 원인에 대해서 검증을 하면 A집단인 전문가 중간재 평균값은 3.6 이고 B집단인 피교육생 중간재의 평균값은 2.76 인데 전문가 A집단에 대한 피교육생 B집단의 차이를 비교 하였으므로 A집단의 값이 B집단의 값보다 크기 때문에 양의부호가 나오는 것이며, 대체가능물품 역시 A집단 평균값 3.29 와 B집단 평균값 2.54 으로 A집단이 B집단보다 더 크고, 세트물품 또한 A집단 평균값 2.94 와 B집단 평균값 2.36 으로 A집단의 평균값이 크기 때문에 양의부호가 나온다. 그리고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수들 중 유일하게 음의부호가 나온 역내가공원칙은 A집단 평균값 1.79 와 B집단 평균값 2.34 으로 B집단의 평균값이 A집단의 평균값보다 작기 때문에 음의부호가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제 3절 이해도 차이가 나는 결정기준들의 애로사항

4.3.1 중간재

전문가 A집단에 대하여 피교육생 B집단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중간재의 t값이 ($t=4.514$)로 양의부호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전문가가 느끼는 어려움이 피교육생이 느끼는 어려움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표 4-6> 피교육생의 어렵게 느끼는 순서와 <표 4-7> 전문가가 어렵게 느끼는 순서의 중간재의 평균값으로 비교하면 전문가의 평균값 3.6 이며 피교육생의 평균값 2.76 인 것을 보고 확인을 할 수 있다.



자료 : 국제원산지정보원

중간재는 제품 생산에 투입하기 위하여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제품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재료를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 <그림 4-1>을 예로 설명하면 국내의 자동차 생산자 A업체가 국산 엔진블럭과 중국산 샤프트를 구입하여 엔진을 직접 만든 경우 그 엔진은 중간재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이 사례를 경우 자동차 생산자가 수입한 중국산 샤프트 가격 50\$는 비
원산지재료비에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간재 규정에 의하여 이를 포함
함으로써 250\$가 역내부가가치로 계산되므로 이 규정은 역내부가가치 증
대 효과를 갖는다.¹⁹⁾

이처럼 한국산 원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이용하여 중간재를 만들 경우
중간재가 자동차 엔진처럼 아주 많은 부품들로 인해 만들어지는 제품일 경
우 재료로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부품들을 각각 고려하기란 쉽지가 않다.
그에 따른 중간재 원산지결정기준 관련의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에 대해서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를 진행한 결과 중간재의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은 중간재 규정이 원
산지재료로써 지위를 획득한 재료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완제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부가가치기준 품목에 주로 적용된다. 완제품이 아닌 부
분품(중간재)의 구성 비율 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검증대상이 확대되고 이
에 따라 소요시간 등이 더 오래 걸린다고 하였고, 수입물품의 경우 협정상
상이거나 부가가치기준에서 적용된 물품은 고려의 대상이지만 세번변경기
준에서의 사용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제품생산자가 생산에 투입하기 위하여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중간단계의 재료를 직접 생산한 것으로 완제품 제작 시 연속
공정에 있는 물품을 중간재로 볼 수 있는지 판단이 곤란한 사례가 있으며,
자가생산한 경우만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 역내생산품까지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19) 이영달, 「원산지결정기준」, 국제원산지정보원, 2012.2 p.163.

<표 4-10> 중간재의 애로사항

◆ 부가가치기준 적용품목에 사용되는 것으로 완제품이 아닌 부분품(중간재)의 구성 비율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검증대상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소요시간 등이 더 오래걸린다.
◆ 수입물품의 경우 협정상 상이하나 부가가치기준에서 적용된 물품은 고려의 대상이며, 세번변경기준은 논란이 있는 상태이다.
◆ 제품생산자가 생산에 투입하기 위하여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중간단계의 재료를 직접 생산한 것으로(예:자동차회사에서 엔진직접개발) 완성품 제작 시 연속공정에 있는 물품을 중간재로 볼 수 있는지 판단이 곤란한 사례가 있다.
◆ 자가 생산한 경우만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 역내생산품까지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자료 : 연구자 작성

4.3.2 대체가능물품

전문가 A집단에 대하여 피교육생 B집단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대체가능물품의 t값이 ($t=4.341$)로 양의부호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전문가가 느끼는 어려움이 피교육생이 느끼는 어려움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표 4-6> 피교육생의 어렵게 느끼는 순서와 <표 4-7> 전문가가 어렵게 느끼는 순서의 대체가능물품의 평균값으로 비교하면 전문가의 평균값 3.29이며 피교육생의 평균값 2.54 인 것을 보고 확인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전문가를 대상으로 대체가능물품 원산지결정기준 관련의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체가능물품의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은 물품의 원산지기준뿐만 아니라 기업의 회계자료의 재고관리기법까지 확인해야하며, 이들의 물품은 가격 비중이 낮고 제조원가 산출의 편리함을 들어 재고관리기법에 따르지 않고 그냥 제조간접비로 산입하는 사례가 있다. 또한 재고관

리기법에 따른 재고관리가 어려우면 원가를 반영하는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표 4-11> 대체가능물품의 애로사항

◆ 물품의 원산지기준 뿐만 아니라 기업의 회계자료(기법)까지 확인해야한다.
◆ 이들 물품의 가격비중이 낮고 제조원가 산출의 편리함을 들어 재고관리기법에 따르지 않고 제조간접비로 산입하는 사례가 있다.
◆ 재고관리에 대한 관리가 어렵다(재고관리기법에 따라 원가에 반영하는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음)

자료 : 연구자 작성

대체가능물품은 동종 동질의 물품과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여 원산지가 서로 다르더라도 상업적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품 또는 재료이다. 원산지결정 목적상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은 물리적, 회계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물리적으로 구분 보관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재고관리기법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인정된다.²⁰⁾

여기서 말하는 재고관리기법에는 개별법과,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이 있는데 개별법은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구분하여 각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이고, 선입선출법은 먼저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고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후입선출법은 가장 최근에 입고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고 최근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평균법은 물품이 생산 당시의 보관중인 원

20) 이영달, 「원산지결정기준」, 국제원산지정보원, 2012.2 p.174.

산지재료 및 비원산지재료의 평균 취득단가 높은 물품의 원산지에 따라 혼합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런 재고관리기법은 재고관리시스템의 운영이 검증확인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관세특례의 혜택여부를 결정하는데 대체가능한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물리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생산에 사용한 경우에는 동일회계연도 안에서 일관된 재고관리기법으로 재고가 관리되어야 한다. 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제조자의 기록으로 원산지재료와 특혜관세신청을 비교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가 구분이 어렵더라도 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생산에 사용된 재료가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로 구분이 가능해야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3.3 세트물품

전문가 A집단에 대하여 피교육생 B집단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세트물품의 t값이 ($t=3.030$)으로 양의부호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전문가가 느끼는 어려움이 피교육생이 느끼는 어려움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표 4-6> 피교육생의 어렵게 느끼는 순서와 <표 4-7> 전문가가 어렵게 느끼는 순서의 세트물품의 평균값으로 비교하면 전문가의 평균값 2.94 이며 피교육생의 평균값 2.36 인 것을 보고 확인을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세트물품 원산지결정기준 관련의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세트물품의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은 협정별로 상이한 근거규정 등이 존재하므로 협정별로 구분해야 하는 어려움과 각 구성품에 대한 세부확인이 필요하므로 소요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였으며, 수입 통관단계에서 세트물품으로 FTA특혜관세 신청

시 충분한 검토 없이 통관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세트물품은 특혜관세 오적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들이라고 하였고, 실무상 적용의 사례가 많지 않고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와의 FTA에서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각 구성품별로 해당 원산지기준을 적용하는데 세트물품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 문제 역시 존재 한다고 하였다.

세트물품의 범위에 대하여는 협정에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법적용 원칙에 따라 관세법을 적용한다. 첫째, 일견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세트’의 경우, 구성요소 또는 함께 조합된 구성요소들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고 전체로 볼 때 그들이 그 세트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²¹⁾

또한 EFTA, EU에 대해서는 비원산지물품 허용한도를 공장도가격의 15%이하이며 미국, 페루에 대해서는 FOB 가격의 15%이하라고 허용한도를 규정하는데 미국의 섬유류에 대해서는 FOB 가격의 10%이하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공장도가격과 FOB의 가격을 산정하기에도 쉽지가 않다. FOB 기준가격은 역내산재료비와 역외산재료비를 더한 직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와 제조간접비를 포함하여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더한 총원가를 포함하고, 공장도가격과 국내운송비 및 기타경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공장도가격은 FOB가격에서 국내운송비 및 기타경비를 제외한 가격이 공장

21) 「관세·통계 통합 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HS 통칙”이라 한다.) 제 3호 및 관련 규정에서 이들에 해당하는 물품의 분류기준을 제시.

도 가격이 되는데 이러한 가격의 산정에도 어려움이 있다.

<표 4-12> 세트물품의 애로사항

◆ 협정별로 상이한 근거규정 등이 존재하므로 협정별로 구분해야 하며, 각 구성품에 대한 세부확인이 필요하므로 소요시간이 오래 걸린다.
◆ 수입 통관단계에서 세트물품으로 FTA특혜관세 신청 시 충분한 검토 없이 통관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
◆ 특혜관세 오적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다.
◆ 실무상 적용사례가 많지 않고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FTA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세트물품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각 구성품별로 해당 원산지 기준을 적용한다.
◆ 세트물품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문제

자료 : 연구자 작성

4.3.4 역내가공원칙

전문가 A집단에 대하여 피교육생 B집단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역내가공원칙의 t값이 ($t=-3.419$)으로 두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수들 중에서 유일하게 음의부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피교육생이 느끼는 어려움이 전문가가 느끼는 어려움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표 4-6> 피교육생의 어렵게 느끼는 순서와 <표 4-7> 전문가가 어렵게 느끼는 순서의 세트물품의 평균값으로 비교하면 전문가의 평균값 1.79 이며 피교육생의 평균값 2.34 인 것을 보고 확인을 할 수 있다.

역내가공원칙은 제 3장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협정별 역외가공의 허용요건을 살펴보면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페루, EU/터키와의 FTA는 역외가공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칠레와 미국과의 FTA는 역외가공을 허

용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 설립 후 논의하기로 하였다. 품목의 제한은 싱가포르가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4,625개 품목에 대하여 한국에서 수출하는 물품에 역외가공을 허용하고 134개 품목에 대해서는 지역의 제한이 없이 가공비가 40%이하일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EFTA에서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 지역의 제한이 없으며, 267개 품목에 대해 가공비가 40%이하일 경우에 역외가공을 허용하고 그 외의 품목의 경우에는 가공비가 10% 이하일 경우 허용한다. 아세안은 아세안 국별 100 품목, 인도는 108개 품목, 페루는 100개 품목에 대해서 개성공단에서 생산되어진 물품에 대해서만 역외가공을 허용하며 가공비는 40%이하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가공비의 경우 역외에서 투입되는 재료비와 가공비, 운송비의 합계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과 내용들이 각 협정별로 상이하므로 시험을 위주로 공부한 피교육생 입장에서는 <표 3-3>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협정별 허용되는 품목의 수가 많이 규정되어 있으며, 가공비에 대해서도 계산을 통하는 것까지 숙지해야 된다고 판단하지만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미 정형화된 협정을 살펴 적용을 하면 되므로 전문가 집단 보다 피교육생 집단이 어렵게 느끼는 것으로 판단된다.

4.3.5 이해도 차이가 나는 결정기준의 시사점

두 집단간 차이는 t검정을 통하여 중간재, 대체가능물품, 세트물품, 역내가공원칙에 대한 차이가 있었다. 이들 중 역내가공원칙을 제외한 중간재, 대체가능물품, 세트물품이 전문가가 피교육생 보다 어려움을 느끼는 변수

들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세세한 부분까지 따져서 적용을 해야 하므로 복잡하고 적용의 모호함과 원산지를 인정하는데 있어서 현 상태에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는 것이다.

일반기준에서의 원산지 인정을 위한 기준들에 부합하지 못하였더라도 원산지 인정을 해주기 위한 특례기준에 속하는 내용으로써 특례기준이 일반적인 다른 세부항목별 변수 보다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도 사례가 아주 적으며, 이 기준들은 직접 다루어 보지 못한 전문가들이 많았다. 그러한 결과로 인해 중간재와 대체가능물품, 세트물품이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 t검정을 통하여 두 집단간 차이가 나는 변수들을 알아봄으로써 어떠한 이유로 어려움을 느끼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하려고 하였었다. 하지만 t검증 유의수준을 ($P < 0.05$)으로 분석을 하였고 이는 95% 확률에서 두 집단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변수들이 특례기준에 속한 중간재, 대체가능물품, 세트물품이 결과 값으로 나왔으며 이들은 시험을 초점으로 한 교육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 하지 않는 부분이다. 이 들의 내용을 각 협정별로 정리되어있는 <표 3-8>, <표 3-9>, <표 3-14>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으면 되므로 적용되는 사례 부족으로 적용을 시켜 다루어보지 못한 것과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논란이 있는 부분이라고 한 점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기가 어려웠고 의미가 없었다.

피교육생이 전문가보다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변수로는 역내가공원칙이 유일하였다. 역내가공원칙은 <표 3-3>의 협정별 역외가공 요건의 비교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으면 시험위주의 학습에는 대비가 되지만, 협정별로 허용되는 품목이 정되어있다는 부분과 허용되는 가공비가 협정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고, 가공비를 가공공정기준으로 계산하여야한다는 생각에 피교육생이 봤을 때는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오히려 전문가

집단은 각 협정별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적용을 하면 되는 것으로 비교적 이해시키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결과 값이 나왔다. 이는 협정별 역외가공 요건에 대해 잘 구분하여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면 피교육생과 전문가 두 집단의 이해도에 대한 격차는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제 4절 이해도를 어렵게 하는 요인 및 개선요인

4.4.1. 이해도를 어렵게 하는 요인

1) 이해도를 어렵게 하는 요인(피교육생)

<표 4-13> 피교육생의 이해도를 어렵게 하는 요인 빈도

어렵게하는사항 빈도(피교육생)		
	응답	
	N	퍼센트
어렵게하는사항	실무와 이론이 상이	4 2.8%
	세면확인이 어렵다	25 17.4%
	구비서류가 명확하지 않다	15 10.4%
	전문용어들이 생소하다	16 11.1%
	사례 중심의 실무 교육이 부족	18 12.5%
	수직계산이 어렵다	21 14.6%
	세관별, 담당자별 해석이 상이	35 24.3%
	협정의 수가 많고 상이하며 실무적 적용이 복잡	1 0.7%
	기타	9 6.3%
	합계	144 100.0%

자료: 연구자 작성

피교육생이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교육을 수강함에 있어서 세부항목별

내용에 대해 이해도나 어려움을 느끼는 변수들이 어느 세부항목들에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결과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어려움을 느끼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조사는 설문지로 진행이 되었으며 원산지결정 기준의 세부항목별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렵게 하는 요인에 대해서 선택문항에 3가지를 체크하도록 작성되었다.

먼저 교육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23.5%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원산지관리사 양성교육은 8시간씩 3일 동안 총 24시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므로 많은 양을 지니고 있는 원산지관련 교육에 대해서 학습 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전문용어가 어렵다는 응답이 22%를 차지하였다. 위의 피교육생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통해 원산지관련 업무경험이 없는 교육생이 74.1%에 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에 따라 전문용어가 많은 원산지에 대한 교육이 어려움을 느끼는 요인이 되었다. 16.1%는 각 협정별 규칙적이지 않아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고 12.5%는 사례 중심의 실무교육이 부족하다고 하였으며, 10.2%는 기초부터 접근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이는 처음 접하는 교육대상이 많은 만큼 교육의 눈높이가 맞지 않고 그에 따른 어려움에 대해 사례 중심의 실무교육이 아닌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진행으로 어려움을 느끼며 협정간의 규정들이 상이하여 더욱 이해하는데 있어서 힘들다고 하였다.

그 외에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교재가 없다 6.7%와 교육교재가 복잡하다는 4.3%, 수식계산이 어렵다는 3.5%가 있었으며 기타의 응답이 1.3%가 있었다. 기타 응답의 내용으로는 FTA의 방대한 정보와 대체적으로 강의기법이 다소 평이해서 집중이 안 된다는 의견과 교육 일수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있었는데 너무 시험의 위주의 교육이라 실무에서는 어떤 항목이 주로 쓰이는지 알기 힘들다고 하였다.

2) 이해도를 어렵게 하는 요인(전문가)

<표 4-14> 전문가의 이해도를 어렵게 하는 요인 빈도

어렵게하는사항빈도(전문가)			
		응답	
		N	퍼센트
어렵게하는사항	교육시간이 부족	60	23.5%
	교육교재가 복잡	11	4.3%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교재가 없다	17	6.7%
	각 협정별 규칙적이지 않다	41	16.1%
	전문용어가 어렵다	56	22.0%
	사례 중심의 실무교육이 부족	32	12.5%
	기초부터 접근하지 않는다	26	10.2%
	수식계산이 어렵다	9	3.5%
	기타	3	1.2%
	합계	255	100.0%

자료: 연구자 작성

FTA협정에 관한 내용의 원산지결정기준 일반기준에 관한 세부항목별 내용에 대해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적용, 심사, 강의하는 전문가 집단(세관공무원, 관세사, 교육강사 등)에 대해 이해도와 관련하여 어렵게 하는 사항들이 무엇인지를 설문을 통하여 진행하였고 피교육생과 마찬가지로 가장 어렵게 하는 요인에 대해서 선택문항에 3가지를 체크하도록 작성되었다. 그 결과 세관별, 담당자별 해석이 상이 하여 원산지에 대한 업무나 강의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이 2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세번확인이 어렵다는 응답이 17.4%로 뒤를 이었다. 또한 수식계산이 어렵다는 14.6%를 사례 중심의 실무 교육이 부족하다고 12.5%의 응답이 나왔다. 이는 피교육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사가 현장에서 원산지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실무자들이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의 이해도나 어려움에 대해서 실무와 연관을 지어서 응답하여 이러한 수치가 나온 것 같다. 또한 전

문용어들이 생소하다는 11.1%를 보아 피교육생과 같이 전문가들의 입장에 서도 수강생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전문용어에 대한 전달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뒤로 10.4%의 구비서류가 명확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으며, 협정의 수가 많고 상이하여 실무적 적용이 복잡(스파게티볼 효과)의 응답이 6.3%를 차지하였다. 나머지 실무와 이론이 상이하다는 2.8%의 응답이 나왔고 기타의 응답이 0.7%의 수치를 보였다. 기타의 내용은 실무적인 부분에서 나왔으며 제조업체에 대한 FTA컨설팅에 있어 세부 정보공개 범위의 여부가 어렵다고 하였다.

4.4.2 이해도 제고를 위한 개선요인

1) 이해도 제고를 위한 개선요인(피교육생)

<표 4-15> 이해도 제고를 위한 개선요인 빈도(피교육생)

이해도가 높아지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사항(피교육생)			
		응답	
		N	퍼센트
도움이 필요한 사항	사례를 이용한 교육 필요	8	25.8%
	강의시간이 부족하다	8	25.8%
	관련된 다양한 강의 개설	5	16.1%
	예시문제를 통한 이해 필요	3	9.7%
	머뭇집, 요약 프린터 배포	3	9.7%
	c/o작성 같은 실무적인 교육 필요	2	6.5%
	강의가 원초적이다(흥미감소)	2	6.5%
합계		31	100.0%

자료: 연구자 작성

FTA원산지결정기준 세부내용별 교육과 관련하여 <표 4-12> 이해도를 어렵게 하는 요인에 대하여 이해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서술형 문항을 만들어 설문지를 진행하였다. 이 문항에 대해 의견이 있는 대상만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85명 중 31명의 응답자가 기술하였다.

이를 분석한 결과 사례를 이용한 교육이 필요하고 강의시간의 증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수치가 각각 25.5%를 차지하였다. 이 수치는 <표 4-12>의 이해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의 교육시간이 부족 23.5%와 사례 중심의 실무교육이 부족하다는 12.5%에 대한 반영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교재가 없다는 6.7%에 대하여 도움이 될 사항으로 관련된 다양한 강의가 개설되길 바란다는 16.1%의 수치가 나왔으며, 예시문제를 통한 이해필요 9.7%가 필요하다는 응답과 어휘집, 요약 프린터 배포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9.7%의 수치가 나왔다. 이 수치 또한 <표 4-12>의 이해도를 어렵게 하는 요인에서의 전문용어가 어렵다는 22%와 기초부터 접근하지 않아서 어렵다는 10.2% 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연관 지을 수 있다.

그 외의 c/o작성과 같은 실무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강의를 원초적이어서 집중이 안되므로 흥미를 유발시키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각각 6.5%로 나왔으므로 원산지결정기준과 관련된 서류에 대한 설명과 작성 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좀 더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할 수 있으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2) 이해도 제고를 위한 개선요인(전문가)

<표 4-16> 이해도 제고를 위한 개선요인 빈도(전문가)

이해도가 높아지기 위해 도움이 될만한 사항(전문가)			
		응답	
		N	퍼센트
도움이 될만한 사항	사례를 이용한 교육 필요	6	40.0%
	FTA별 특징 및 비교분석	4	26.7%
	HS의 이해가 필요	3	20.0%
	정부 및 교육기관의 협력 필요	2	13.3%
합계		15	100.0%

자료: 연구자 작성

FTA협정에 관한 내용의 원산지결정기준 일반기준에 관한 세부항목별 내용에 대해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적용, 심사, 강의하는 전문가 집단(세관공무원, 관세사, 교육강사 등)에 대해 이해도와 관련하여 어렵게 하는 사항들이 무엇인지를 설문을 통하여 진행하였다. <표 4-13>의 이해도를 어렵게 하는 요인에 대하여 피교육생 대상의 설문과 마찬가지로 방식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개선요인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서술형 문항을 만들어 설문지를 진행하여 이 문항에 대해 의견이 있는 대상인 48명 중 15명의 응답자가 기술하였다.

이를 분석한 결과 사례를 이용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0%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 수치는 앞의 <표 4-13>의 이해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의 세관별, 담당자별 해석이 상이하다는 24.3%와 사례 중심의 실무 교육이 부족하다는 12.5%에 대하여 반영된 결과 인 것을 알 수 있다. FTA협정별 특징 비교분석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6.7%가 나왔는데 이 수치 역시 <표 4-13>에서의 협정의 수가 많고 상이하여 실무적 적용이 복잡(스파게티 효과)하다는 응답 6.3%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HS의 이해가 필

요하다는 20%의 응답이 나왔다. 이 역시 <표 4-13>의 세번확인이 어렵다는 17.4%의 응답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의 정부 및 교육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13.3%의 응답으로 앞으로 보다 더 좋은 교육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기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5장 결론

제 1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원산지결정기준의 세부항목별 내용인 17가지 변수들 중 중간재, 대체가능물품, 세트물품, 역내가공원칙에서 전문가집단과 피교육생 집단간의 차이를 보였으며 중간재, 대체가능물품, 세트물품은 전문가 집단에서 피교육생 집단보다 어려움을 느꼈다. 이는 피교육생이 세부 내용들에 느끼는 난이도 보다 전문가 입장에서 피교육생을 상대로 이 변수들에 대해 이해시키려 할 때 어렵게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되는 것을 말한다. 그 외의 역내가공원칙에서는 전문가 집단보다 피교육생 집단에서 더 어려움을 느꼈는데 이는 각 협정별 역외가공허용기준을 따라라 원산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허용되는 품목의 수가 규정되어 있다(개성공단 포함). 또한 협정별로 역외가공이 허용되는 가공비(%)를 따져야 하므로 피교육생이 어렵게 느끼는 결과가 나왔지만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미 규정되어 있는 항목들을 가지고 적용을 시키면 되는 것으로 피교육생에 비해 어렵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피교육생 집단의 이해도를 어렵게 하는 사항은 교육시간 부족 23.5%과 사례 중심의 실무교육이 부족하다는 응답 12.5%에 대해서 사례를 이용한 교육이 필요하고 강의시간의 증가가 필요하다고 하다고 각각 25.5%의 결과를 보였다. 또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교재가 없다는 6.7%에 대하여 도움이 될 사항으로 관련된 다양한 강의가 개설되길 바란다는 16.1%의 수치가 나왔으며, 예시문제를 통한 이해필요 9.7%가 필요하다는 응답과 어휘집, 요약 프린터 배포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9.7%의 수치가 나

왔는데 이 수치 또한 어렵게 하는 사항에서의 전문용어가 어렵다는 22%와 기초부터 접근하지 않아서 어렵다는 10.2% 대하여 도움이 될 사항이라고 연관 지을 수 있다. 그 외의 C/O(원산지증명서)작성과 같은 실무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강의가 원초적이어서 집중이 안 되므로 흥미를 유발시키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각각 6.5%로 나왔으므로 원산지결정기준과 관련된 서류에 대한 설명과 작성 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좀 더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할 수 있으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 집단의 이해도를 어렵게 하는 사항은 세관별, 담당자별 해석이 상이하다는 24.3%와 사례 중심의 실무 교육이 부족하다는 12.5%에 대하여 사례를 이용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0%로 가장 높게 나왔다. 또한 협정의 수가 많고 상이하여 실무적 적용이 복잡(스파게티볼 효과)하다는 응답 6.3%에 대하여 FTA협정별 특징 비교분석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6.7%가 나왔으며, 세번확인이 어렵다는 17.4%의 응답에 대해 도움되기 위해 HS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20%의 응답이 나왔다.

그 외의 정부 및 교육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13.3%의 응답으로 앞으로 보다 더 좋은 교육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기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제 2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

피교육생이 수강하는 교육은 ‘원산지관리사’의 양성교육으로 시험을 위한 교육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많은 교육생들이 시험의 초점이 아닌 실

무적인 교육을 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교육의 기본 시스템적인 문제로 많은 개선 사항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교육은 일반적으로 하루에 8시간씩 총 3일에 걸쳐 24시간의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연속으로 이어진 교육으로 인해 피로도 누적으로 교육 시간을 줄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었지만, 오히려 방대한 양에 비해서 교육시간의 부족으로 시간에 쫓기는 형식적인 교육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좀 더 장기적인 교육을 통해 효율적인 교육이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무에 나가서도 접목할 수 있도록 c/o작성과 같은 서류에 대해서 직접 다루어보길 원했다. 이에 따라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진행되는 교육을 통해 앞으로 어떤 업무를 맡게 되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므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인다.

또한 이 연구의 한계점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시기별로 개설이 되기 때문에 그에 비해 설문조사의 대상범위가 비교적 작아서 전국의 피교육생 전체를 집단으로 진행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었으며, 이 교육의 피교육생은 총 교육시간 24시간 중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해 8시간의 강의를 듣고 설문에 응답하게 됨으로 신뢰성이 있는 설문이 작성이 될지 걱정이었지만 17가지 변수들 중 역내가공원칙, 중간재, 대체가능물품, 세트물품의 4가지 변수에 대해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중 피교육생 보다 전문가입장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의 평균값이 높았던 중간재, 대체가능물품, 세트물품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세세한 부분까지 고려해야 되고 그에 따른 사례부족에 의해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공통적이 있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원산지관리사’의 양성교육 일부의 국비를 지원 받아 시행되는 것으로 대외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유관기관들의 협조가 쉽지 않았고,

연구의 진행을 위해 자료를 조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향후 좀 더 다양한 초점에서의 연구와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원활한 협조를 통하여 연구가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 조국형(2012), FTA원산지결정에 미치는 요인분석 :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진희(2013), 한·중 FTA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기영(2009), 한·인도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요천주(2013), 중국의 FTA원산지결정기준 비교 연구 : 중·ASEAN, 칠레, 뉴질랜드 FTA중심으로,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엽하(2009), FTA원산지결정에 관한 비교 연구 : 중·칠레 FTA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평(2011), 중·한 FTA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동택영(2006), 한·중·일 FTA 추진에 따른 한국 주요산업의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희숙(2005), 한·중·일 FTA추진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무한(2010), FTA원산지결정기준에 따른 활용전략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순옥(2011), 한국 FTA 부가가치 원산지결정기준의 효율적 적용에 대한 연구,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주재협(2011),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별 원산지결정기준 및 세관절차 규정에 대한 비교 연구, 호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마일남(2005), FTA규정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연구, 군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성임(2010), FTA원산지규정을 활용한 수출 전략 : 원산지결정기준 활용

모델을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영달(2012), 원산지결정기준, 국제원산지정보원.

윤광운·노현수(2012), 무역실무, 탐북스.

최문·이상빈(2011), 한·중 FTA협상에 대비한 섬유산업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현대중국학회 12(2), 241-277.

고용부(2006), 우리나라 FTA 협정상 원산지 규정의 의의 및 결정기준 비교, 법무처 71, 10-39.

박현희(2012), 한국의 기체결 FTA협정상 원산지결정기준의 비교 연구, 무역학회지 37(2), 335-357.

김재식(1997), 무역물품에 대한 원산지 규정의 통입협상에 관한 사례연구, 경영연구 6(1), 67-87.

김세영·조국형(2012), FTA원산지결정에 미치는 요인분석, 관세학회지 13(2), 69-91.

엄광렬·홍길중(2006), 한·미 FTA 추진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10(2), 342-366.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tfa.go.kr/>

관세청 <http://customs.go.kr/>

무역협회 <http://www.kita.net/>

국제원산지정보원 <http://origin.or.kr/>

FTA무역종합지원센터 <http://okfta.kita.net>

<부록 1> 피교육생용 설문지

FTA 원산지 결정기준 이해도 조사
(피교육생용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통상물류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박기영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설문은 “FTA 원산지 결정기준 이해도에 관한 연구”의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FTA 원산지 결정기준 교육에서 피교육생의 세부 내용별 이해도를 조사함으로써, 해당 교육의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FTA 분야 전문가 배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어 학술적인 목적에만 사용될 것이며, 그 외의 목적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8월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통상물류학과
석사과정 박 기 영 (010-4262-6879)
(지도교수 이 정 윤)

FTA 원산지 결정기준 이해도에 관한 연구 - FTA 관련 교육생 대상 설문 -

([]의 내용은 질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설명으로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십시오.)

1. FTA 원산지 결정기준 중 ‘일반기준’은 크게 역내가공원칙(역내생산기준), 충분가공원칙, 직접운송원칙 등으로 구분됩니다. 피교육생의 입장에서 각각의 세부 기준이나 원칙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에 대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않다

어렵다

매우어렵다

역내가공원칙(역내생산기준)	1	2	3	4	5
----------------	---	---	---	---	---

[물품 생산이 모두 체약국 역내에서 수행]

충분가공원칙	1	2	3	4	5
--------	---	---	---	---	---

[역외국가 재료를 사용하였더라도 역내에서 실질적 변형을 거쳤다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

직접운송원칙	1	2	3	4	5
--------	---	---	---	---	---

[통상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

2. 위의 역내가공원칙(역내생산기준), 충분가공원칙, 직접운송원칙은 완전생산되었는지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는지의 구분으로 나뉘어집니다. 피교육생의 입장에서 각각의 세부 기준이나 원칙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에 대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않다

어렵다

매우어렵다

완전생산품	1	2	3	4	5
-------	---	---	---	---	---

[이론적으로 한 국가의 재료로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된 물품]

불완전생산품(실질적변형물품)	1	2	3	4	5
-----------------	---	---	---	---	---

[원산지 재료만으로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역내에서 전적으로 생산한 상품]

3. 일반기준에서의 역내생산기준과 충분가공원칙과 같은 불완전생산품(실질적변형물품)은 품목별기준의 세번변경기준, 가공공정기준, 부가가치기준으로 원산지결정이 정해진다. 피교육생의 입장에서 각각의 세부 기준이나 원칙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에 대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않다

어렵다

매우어렵다

세번변경기준	1	2	3	4	5
--------	---	---	---	---	---

[역내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세번과 다른 세번의 상품이 생산되면 그 상품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

가공공정기준	1	2	3	4	5
--------	---	---	---	---	---

[제조공정 중 가장 중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주요한 특성을 발생시키는 기술적 제조·가공작업을 역내에서 수행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

부가가치기준	1	2	3	4	5
--------	---	---	---	---	---

[역내에서 일정한 수준의 부가가치가 창출된 경우에 원산지물품으로 인정]

4. 일반기준에서 원산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원산지를 인정 해주기 위한 원산지결정의 특례(보충)기준이 크게 10가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교육생의 입장에서 각각의 세부 기준이나 원칙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에 대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않다

어렵다

매우어렵다

누적기준	1	2	3	4	5
------	---	---	---	---	---

[상대국 원산지 재료를 상품 생산국 재료로 간주]

최소허용기준(미소기준)	1	2	3	4	5
--------------	---	---	---	---	---

[비원산지 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

중간재	1	2	3	4	5
-----	---	---	---	---	---

[중간재인 비원산지 재료가격을 포함한 가격전체를 원산지재료비에 계상]

대체가능물품	1	2	3	4	5
--------	---	---	---	---	---

[동종 동질의 물품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여 원산지가 다르더라도 대체하여 사용가능]

간접재료	1	2	3	4	5
------	---	---	---	---	---

[제품의 생산 및 검사 과정에 사용되지만, 그 제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은 재료]

부속품·예비부분품·공구	1	2	3	4	5
--------------	---	---	---	---	---

[원산지·비원산지 불문하고 세번변경기준 적용시는 원산지를 고려 하지않고, 부가가치기준 적용시에는 원산지를 고려함]

소매용 포장·용기	1	2	3	4	5
-----------	---	---	---	---	---

[세번변경기준시 소매용 포장·용기를 제외하고 원산지결정, 부가가치기준 적용시 소매용 포장·용기도 각각 원산지 구분적용]

운송 포장·용기	1	2	3	4	5
----------	---	---	---	---	---

[운송 포장·용기는 모든 FTA에서 원산지결정시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규정 (모두무시)]

세트물품	1	2	3	4	5
------	---	---	---	---	---

[세트물품도 구성품 별로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비원산지물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세트 구성품 전체를 원산지물품으로 간주]

재수입물품	1	2	3	4	5
-------	---	---	---	---	---

[EFTA, 인도, EU, 페루와의 FTA에서는 비당사국으로 수출되었다가 원상태로 재수입된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를 그대로 인정하는 특례조항을 규정]

5. FTA원산지결정기준의 세부내용들을 이해할 때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어려움을 느낀다면 그렇게 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해하는데 가장 어렵게 하는 요인 3가지만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많은 내용들에 비해 교육시간이 부족하다. ()
2. 교육교재가 이해하기에 복잡하게 구성되어있다.()
3.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교재가 없다. ()
4. 각각의 주제마다 협정별로 규칙적이지 않아서 헷갈린다. ()
5. 협정에서 다루고 있는 전문용어들이 생소하여 와 닿지 않는다. ()
6. 사례 중심의 실무 교육이 부족하다. ()
7. 강의 눈높이를 기초부터 접근하지 않는다. ()
8.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의 수식계산이 어렵다. ()
9. 기타 ()

6. 다음은 분류를 위한 일반적 사항입니다. 다음 문항에 귀하가 해당하는 곳에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a) 남자 (b)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 (a) 20대 이하 (b) 30대 (c) 40대 (d) 50대 이상

(3) 귀하의 학력은?

- (a) 고졸 이하 (b) 전문대졸 (c) 대졸 (d) 대학원 이상

(4) 귀하는 FTA원산지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 (a) 그렇다 (b) 아니다

(5) FTA원산지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시다면 근무기간은?

- (a) 1년 이하 (b) 2년 이하 (c) 3년 이하 (d) 4년 이하 (e) 5년 이상

7. FTA원산지결정기준 세부내용별 교육 이해도가 높아지기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부록 2> 전문가용 설문지

FTA 원산지 결정기준 세부내용별 난이도 조사
(FTA 전문가용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통상물류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박기영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설문은 “FTA 원산지 결정기준 세부내용별 난이도 연구”의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FTA 원산지 결정의 세부 기준(원칙)을 피교육생 또는 업체에게 설명(강의, 컨설팅)하시거나,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느끼는 난이도를 조사함으로써, 관련 교육(컨설팅) 업무에서의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FTA 분야 전문인력 배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어 학술적인 목적에만 사용될 것이며, 그 외의 목적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8월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통상물류학과
석사과정 박 기 영 (010-4262-6879)
(지도교수 이 정 윤)

FTA 원산지 결정기준 세부내용별 난이도 조사

- FTA 전문가 대상 설문 -

([]의 내용은 질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설명으로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십시오.)

1. FTA 원산지 결정기준 중 ‘일반기준’은 크게 역내가공원칙(역내생산기준), 충분가공원칙, 직접운송원칙 등으로 구분됩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FTA 원산지 결정의 세부 기준(원칙)을 피교육생 또는 업체에게 설명(강의, 컨설팅)하시거나,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이해하기 어려움을 느낄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않다

어렵다

매우어렵다

역내가공원칙(역내생산기준)	1	2	3	4	5
	()	()	()	()	()

[물품 생산이 모두 체약국 역내에서 수행]

충분가공원칙	1	2	3	4	5
	()	()	()	()	()

[역외국가 재료를 사용하였더라도 역내에서 실질적 변형을 거쳤다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

직접운송원칙	1	2	3	4	5
	()	()	()	()	()

[통상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

2. 위의 역내가공원칙(역내생산기준), 충분가공원칙, 직접운송원칙_은 완전생산되었는지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는지의 구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FTA 원산지 결정의 세부 기준(원칙)을 피교육생 또는 업체에게 설명(강의, 컨설팅)하시거나,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이해하기 어려움을 느낄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않다

어렵다

매우어렵다

완전생산품	1	2	3	4	5
	()	()	()	()	()

[이론적으로 한 국가의 재료로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된 물품]

불완전생산품 (실질적변형물품)	1	2	3	4	5
	()	()	()	()	()

[원산지 재료만으로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역내에서 전적으로 생산한 상품]

3. 일반기준에서의 역내생산기준과 충분가공원칙과 같은 불완전
 생산품(실질적변형물품)은 품목별기준의 세번변경기준, 가공공
 정기준, 부가가치기준으로 원산지결정이 정해진다. 전문가 입장
 에서 FTA 원산지 결정의 세부 기준(원칙)을 피교육생 또는 업
 체에게 설명(강의, 컨설팅)하시거나,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이
 해하기 어려움을 느낄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 곳에 체크해 주시
 기 바랍니다.

어렵지않다

어렵다

매우어렵다

	1	2	3	4	5
세번변경기준	()	()	()	()	()

[역내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세번과 다른 세번의 상품이 생산되면
 그 상품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

	1	2	3	4	5
가공공정기준	()	()	()	()	()

[제조공정 중 가장 중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주요한 특성을 발생시키는 기술적 제
 조·가공작업을 역내에서 수행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

	1	2	3	4	5
부가가치기준	()	()	()	()	()

[역내에서 일정한 수준의 부가가치가 창출된 경우에 원산지물품으로 인정]

4. 일반기준에서 원산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원산지를 인정해 주기위한 원산지결정의 특례(보충)기준이 크게 10가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가 입장에서 FTA 원산지 결정의 세부 기준(원칙)을 피교육생 또는 업체에게 설명(강의, 컨설팅)하시거나, 관련 업무를 처리할때 이해하기 어려움을 느낄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않다		어렵다		매우어렵다
누적기준	1 ()	2 ()	3 ()	4 ()	5 ()

[상대국 원산지 재료를 상품 생산국 재료로 간주]

최소허용기준(미소기준)	1 ()	2 ()	3 ()	4 ()	5 ()
--------------	----------	----------	----------	----------	----------

[비원산지 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

중간재	1 ()	2 ()	3 ()	4 ()	5 ()
-----	----------	----------	----------	----------	----------

[중간재인 비원산지 재료가격을 포함한 가격전체를 원산지재료비에 계상]

대체가능물품	1 ()	2 ()	3 ()	4 ()	5 ()
--------	----------	----------	----------	----------	----------

[동종 동질의 물품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여 원산지가 다르더라도 대체하여 사용가능]

간접재료	1	2	3	4	5
	()	()	()	()	()

[제품의 생산 및 검사 과정에 사용되지만, 그 제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은 재료]

부속품·예비부분품·공구	1	2	3	4	5
	()	()	()	()	()

[원산지·비원산지 불문하고 세번변경기준 적용시는 원산지고려 하지않고, 부가가치기준 적용시에는 원산지를 고려함]

소매용 포장·용기	1	2	3	4	5
	()	()	()	()	()

[세번변경기준시 소매용 포장·용기를 제외하고 원산지결정, 부가가치기준 적용시 소매용 포장·용기도 각각 원산지 구분적용]

운송 포장·용기	1	2	3	4	5
	()	()	()	()	()

[운송 포장·용기는 모든 FTA에서 원산지결정시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규정 (모두무시)]

세트물품	1	2	3	4	5
	()	()	()	()	()

[세트물품도 구성품 별로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비원산지물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세트 구성품 전체를 원산지물품으로 간주]

재수입물품	1	2	3	4	5
	()	()	()	()	()

[EFTA, 인도, EU, 페루와의 FTA에서는 비당사국으로 수출되었다가 원상태로 재수입된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를 그대로 인정하는 특례조항을 규정]

5. 전문가 입장에서 FTA 원산지 결정의 세부 기준(원칙)을 피교육생 또는 업체에게 설명(강의, 컨설팅)하시거나, 관련 업무를 처리 할 때 어려움을 느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요인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해하는데 가장 어렵게 느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요인 3가지만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실무와 이론이 상이하다. ()
2. 세번확인이 어렵다. ()
3. 구비서류가 명확히 정해져있지 않아 어렵다. ()
4. 협정에서 다루고 있는 전문용어들이 생소하여 와 닿지 않는다. ()
5. 원산지 관련의 사례 중심의 실무 교육이 부족하다. ()
6.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의 수식계산이 어렵다. ()
7. 세관별, 담당자별 해석이 상이한 경우가 있다. ()
8. 협정의 수가 많고 각자 상이하여 실무적 적용이 복잡(스파게티 볼 효과). ()
9. 기타 ()

6. 다음은 분류를 위한 일반적 사항입니다. 다음 문항에 귀하가 해당하는 곳에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a) 남자 () (b) 여자 ()

(2) 귀하의 연령은?

- (a) 20대 () (b) 30대 () (c) 40대 () (d) 50대 이상 ()

(3) 귀하의 학력은? (재학중인 경우도 포함)

- (a)고등학교 () (b) 전문대 () (c) 대학교 () (d) 대학원 ()

(4) FTA와 관련하여 근무기간은?

- (a) 1년 이하 () (b) 2년 이하 () (c) 3년 이하 () (d) 4년 이하 () (e) 5년 이상 ()

<선택사항>

7. FTA원산지결정기준 세부내용별 교육 이해도가 높아지기 위해
서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십시
오.

A Study on the Understanding Level of Content Details of the
Criteria in Determining the Country of Origin Regarding FTA
- Focusing on the differences between specialists and students -

Park gi-young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In order to be applicable to the FTA preferential tariff, it is essential to receive certification as the country of origin for import and export of goods. That is why in the practice of FTA, understanding and applying the criteria in determining the country of origin can be argued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However, regarding the criteria in determining the country of origin these days, the category is too diverse and complex, and further ambiguous in phrasing. As a result, non-specialists are faced with difficulty in understanding the criteria in determining the country of origin.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governments and various related organizations are trying to help better understanding in the criteria in determining the country of origin and improve the effect of utilizing FTA by cultivating specialists through various training courses, including the "Country of Origin Administrator" training course. For example in 2014, by the end of October there were various training courses for approximately 4200 students opened and taking place, and these kinds of efforts are perceived to be expanded further in the future.

There have been many researches on FTA agreements or

macroscopic economic effects of FTA so far, however a lack of research on the understanding level and benefit of training related to the criteria in determining the country of origin – which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utilization of FTA.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two separate groups – specialists who apply, evaluate, and teach the criteria in determining the country of origin(customs officials, customs brokers, education instructors etc.), and students who receive related training courses, in order to compare and analyse the difference between groups in the difficulty and understanding levels related to the detailed contents of various criteria in determining the country of origin.

The result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future academic achievement of relevant curriculum, and also contribute to effective training of professional manpower related to FTAs and in setting the criteria in determining the country of origin.

